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94호 2022. 4. 18.(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881호 정선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1

○ 정선군 조례 제2882호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4

○ 정선군 조례 제2883호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8

○ 정선군 조례 제2884호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16

○ 정선군 조례 제2885호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30

○ 정선군 조례 제2886호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37

○ 정선군 조례 제2887호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 정선군 조례 제2888호 정선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42

○ 정선군 조례 제2889호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45

○ 정선군 조례 제2890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51

○ 정선군 조례 제2891호 정선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55

○ 정선군 조례 제2892호 정선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58

○ 정선군 조례 제2893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74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67호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96

○ 정선군 규칙 제1368호 정선군 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104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79회 정선군의회(2022. 03. 31.)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3. 21.)에서 의결된 정선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81호

정선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정선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선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한 활동 보고서 또는 백서를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2.01.13.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군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수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직무(안 제2조 ~ 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및 수당 지급(안 제6조 ~ 안 제7조)

라.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안 제8조)

제279회 정선군의회(2022. 03. 31.)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3. 21.)에서 의결된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82호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군수는 군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2. 인구정책의 분야별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업별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사업 등) 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

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1.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사업
2.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지원 사업
3. 보건·의료 지원 사업
4.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5. 귀농귀촌 지원 사업
6.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7. 가족친화·성 평등 사회 환경 조성 사업
8. 인구관련 교육·홍보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군수는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기업·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불균형 극복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써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구정책, 출산·보육·보건·교육·가족·노인 정책, 일자리 정책, 귀농·귀촌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라.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8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증가 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정선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인구정책 기본계획(안 제5조)

다. 인구정책사업 등(안 제6조)

라.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마.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제12조)

제279회 정선군의회(2022. 03. 31.)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3. 21.)에서 의결된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83호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촌협약”이란 군이 농촌 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농촌협약 위원회)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원활한 진행과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정선군 농촌협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농촌생활권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3.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부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촌지역개발 민간전문가, 농촌중심지 및 권역 추진위원장
2. 농촌관광 및 체험마을 대표
3.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제1항 중 “1명을 둔다”를 “2명을 두고, 농촌 활성화 전담부서 담당 공무원과 중간지원조직의 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를 “(농촌협약 지원센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농촌 활성화 정책 목표 달성과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읍·면 단위 발전계획(자치계획) 수립 지원
2. 주민 리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마을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
4. 농촌 읍·면 소재지 개발과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지원
5.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복지 서비스 활동 지원
6. 농촌협약 전략계획 및 생활권계획 수립 지원
7.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사업 참여 지원
8. 농촌협약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분석, 홍보 등의 지원
9. 농촌협약 전반의 민관 거버넌스 및 지역 내 민간 기관·단체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 기타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제3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농촌협약”이란 군이 농촌 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4조(농촌 활성화 위원회) 군수는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촌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농촌협약 위원회)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원활한 진행과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정선군 농촌협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농촌생활권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3.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부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촌지역개발 민간전문가, 농촌중심지 및 권역 추진위원장	1. 농촌지역개발 민간전문가, 농촌중심지 및 권역 추진위원장
2. 농촌관광 및 체험마을 대표	2. 농촌관광 및 체험마을 대표
3.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

현 행	개 정 안
	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촌 활성화 관련 업무	제9조(간사) ① ---------- 2명을 두고, 농촌 활성화 전담부서 담당 공무원과 중간지원조직의 장으로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① ~ ⑤ (생 략)	제10조(농촌협약 지원센터)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농촌지역 활성화와 민간협력관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농촌 활성화 정책 목표 달성과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간지원조직의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1.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읍·면 단위 발전계획(자치계획) 수립 지원
2. 유·무형의 지역자원 조사, 발굴, 분석, 연구 및 사업화	2. 주민 리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연수, 컨설팅 및 지역역량 강화	3. 마을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
4.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4. 농촌 읍·면소재지 개발과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지원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5. 농촌 주민 삶의질 향상과 농촌 복지 서비스 활동 지원
6. 농촌중심지 활성화, 마을 만들기 등 관련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6. 농촌협약 전략계획 및 생활권계획 수립 지원
7. 생활권 활성화, 관광·체험마을 만들기, 신(新)활력 플러스, 귀농귀촌 및 청년활동 장려	7.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사업 참여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농촌협약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분석, 홍보 등의 지원

현 행	개 정 안
	9. 농촌협약 전반의 민관 거버넌스 및 지역 내 민간 기관·단체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 기타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제안이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협약 등)의 정책변화에 대응하고, 시행지침 이행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농촌협약 제도의 기본내용 규정(안 제2조)

나. 농촌 활성화 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의결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행정· 민간위원장 선출 및 위촉 위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 규정(안 제5조)

라. 행정·민간 공동 간사 운영(안 제9조)

마.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명칭 변경 및 업무 규정(안 제10조 ~안 제11조)

제279회 정선군의회(2022. 03. 31.)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3. 21.)에서 의결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84호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정선군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및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임권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써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 외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2.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3.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제5조(위임사무) 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4조(「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126조”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14조” 를 “법 제127조”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115조” 를 “법 제128조” 로 한다.

제5조(「정선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 를 “「지방자치법」 제12조” 로 한다.

제6조(「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으로 한다.

제7조(「정선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 을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으로 한다.

제8조(「정선군 반설치 조례」의 개정)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으로 한다.

제9조(「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으로 한다.

제10조(「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으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64조” 를 “「지방자치법」 제73조” 로 한다.

제11조(「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로 한다.

제12조(「정선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조” 를 “「지방자치법」 제16조” 로 한다.

제13조(「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6조(「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제17조(「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2조”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제18조(「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로 한다.

제19조(「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례)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3조(조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

제2조(「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생 략) 1. ~ 2. (생 략) ② (생 략)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의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 4. (생 략) ③ (생 략) 1. ~ 3. (생 략) ④ (생 략)	제6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정선군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종 법령으로 규정된 정선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 기관에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 ----------
제2조(위임권자)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써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 외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2.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3.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②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용권을 정선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2조(위임권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써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 외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2.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3.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제5조(위임사무) 군수가 정선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해야 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르며,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5조(위임사무) 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4조(「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정선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조직과 분장사무 등 그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 ---------- ---------- ----------.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설치)① 법 제114조에 따른 특정업무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 략)	제13조(설치)① 법 제127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설치) ① 읍·면에는 법 제115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편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 략)	제19조(설치) ① ------법 제128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정선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조----------.

제6조(「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

제7조(「정선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제8조(「정선군 반설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

제9조(「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정선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②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정선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생 략)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지방자치법」 제73조----------.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

제12조(「정선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 7. (생 략)	제1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지방자치법」 제16조---------- ---------- 2. ~ 7. (현행과 같음)

제13조(「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33조(위탁관리) ①---------- ---------- ----------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 -.

제15조(「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5. (생 략) 16.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올림픽특구”라 한다)”이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7. (생 략)	제2조(정의) ----------. 1. ~ 15. (현행과 같음) 16.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17. (현행과 같음)

제16조(「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임대아파트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41조----------

제17조(「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주민을 말한다. 3.~5. (생 략)	제1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지방자치법」 제16조---------- 3.~5. (현행과 같음)

제18조(「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정선군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9조(「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정선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인용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전부개정 2021.1.12.)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제279회 정선군의회(2022. 03. 31.)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3. 21.)에서 의결된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85호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7조에 따라 ---------- ---------- ---------- ---------.

[별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읍 면	리 명	이장 정수	분구리명	구 역
계		184		
정선읍	봉양리	10	봉양1리	상동 일부(시장)
			2리	정선군법원,삼우주택,정선농협 부근
			3리	중동
			4리	하동
			5리	녹도 일부
			6리	관음, 생탄, 세대, 동곡
			7리	상동 일부, 적거리
			8리	녹도 일부
			9리	녹도 일부
			10리	봉양주공아파트, 보건소, 소방서 일원
	북실리	5	북실1리	용담, 계봉, 병방치
			2리	마미곡, 개간제, 오압, 부곡, 간곡
			3리	군부대, 아리랑아파트 일대
			4리	사내(미천)
			5리	미소빌아파트, 현대아파트
	덕송리	2	덕송1리	석교동, 납덕동, 내반점, 외반점
			2리	월천, 송오
	애산리	6	애산1리	병방, 어촌, 신촌
			2리	역전 일부
			3리	오반
			4리	구미, 이절, 개끝
			5리	역전 일부
			6리	아리채
	신월리	2	신월1리	와평, 드름터
			2리	월통, 신치, 어치
	덕우리	1	덕우리	덕산기, 대촌, 삼거리, 유천, 거어리
	여탄리	1	여탄리	엿둔, 화작동, 중북동, 본동
	회동리	2	회동1리	월평, 사택
			2리	본동, 세곡, 양지마을, 마항(말목)
	용탄리	3	용탄1리	내촌, 곡구, 실론, 비룡동, 노미, 이평, 세곡
			2리	벽탄, 월평
			3리	기곡, 점촌, 행마
	광하리	2	광하1리	광석, 군언, 상평, 송단, 모평, 선곡
			2리	망하, 여곡, 소탄, 마전
	귤암리	1	귤암리	상귤암, 본동, 하귤암, 의암, 월포, 동무지, 만지산, 옷바우
	가수리	1	가수리	수매, 북대, 가탄, 해매

고한읍	고한리	20	고한1리	만항, 평화촌
			2리	두문동 일부
			3리	두문동 일부, 소두문둥
			4리	박심리, 삼봉
			5리	상갈래 일부, 절골
			6리	중갈래 일부, 중앙아파트, 새마을사택
			7리	중갈래 일부, 진골
			8리	고한주공아파트, 강원랜드다목적숙소 일원
			9리	당목, 대원아파트 일원
			10리	시장 일부
			11리	막골, 신사택
			12리	구 읍사무소 일원
			13리	북부사택, 홀아비골
			14리	고토일
			15리	부금소, 목골, 진밭골
			16리	물한이골
			17리	양지마을
			18리	하갈래
			19리	시장 일부
			20리	정선군임대아파트, 해피아리아파트 일원
사북읍	직전리	1	직전리	무낼, 피내, 주막거리, 발전
	사북리	12	사북1리	범바위
			2리	사북아파트, 선명1차 아파트 일원
			3리	시내
			4리	아랫사북, 구 중앙사택 일원
			5리	골말, 화절령, 구)동원아파트 일원
			6리	도사곡
			7리	웃사북 일부, 소잡는골
			8리	중앙시장 일원
			9리	선명오피스텔, 선명소라파크 일원
			10리	웃사북 일부
			11리	북일
			12리	산수빌아파트 일원
신동읍	예미리	7	예미1리	본동, 의림길
			2리	유문동
			3리	용거리, 수해민주택 일원
			4리	재건촌
			5리	노일 일부, 용주골
			6리	노일 일부, 역전
			7리	납돌
	천포리	1	천포리	예미산, 내곡, 곡길, 본동, 양지마을
	조동리	9	조동1리	절골, 장미연립 일원
			2리	안길운
			3리	개미촌, 구룡동
			4리	시장 일원
			5리	함백초등학교 일원
			6리	새골
			7리	수해민주택 일원
			8리	안경다리
			9리	함백종고 일원

신동읍	방제리	2	방제1리	매화동, 장재터, 원방제, 미륵골, 둔박골, 덕세
			2리	새비재, 설령, 전략촌
	가사리	1	가사리	원가사, 남애, 두리골, 황장골, 마차재
	고성리	2	고성1리	평구, 수촌, 고림
			2리	내창, 병산, 고방, 신진
	덕천리	1	덕천리	원덕천, 소골, 제장, 연포, 바세, 구포
	운치리	3	운치1리	돈이치, 텃골, 터일, 기곡
			2리	수동, 번평, 고재벌
			3리	납운돌, 점재, 설론
화암면	화암리	4	화암1리	그림바위, 웃그림바위, 구슬동(큰・작은 구슬동)
			2리	미천, 천포, 멧둔지, 싸내
			3리	오산, 좌사(양지・음지)
			4리	화표동, 큰터, 후원이, 절골
	석곡리	2	석곡1리	억실, 뒤뜰, 수류골, 마덕, 덕거리
			2리	상석항, 하석항, 베지름골
	북동리	1	북동리	상북동, 하북동, 월애골, 함바위, 뒷골
	몰운리	2	몰운1리	한치, 되기
			2리	몰운, 제동(윗・아랫제동)
	건천리	1	건천리	본동, 큰골, 소일, 송이골
	호촌리	1	호촌리	풍촌, 호명, 어우실
	백전리	2	백전1리	서원기, 정승골, 대지산, 합수거리
			2리	노나무골, 한소리, 마당목
남 면	문곡리	3	문곡1리	별어실, 본동(시내), 무른당
			2리	탑거리, 점촌, 중간마을, 골말, 상사골, 마차재
			3리	자미원, 수리재, 오지구
	무릉리	5	무릉1리	멀미
			2리	내자고치, 안자고치, 싸리실, 능전, 덕만, 발구덕
			3리	삼거리, 척산
			4리	증산(역전)
			5리	묵산, 정직간
	유평리	2	유평1리	잿마을, 소마평, 아산미, 제기실, 새마을, 매기돌,
				능바위, 양지마을
			2리	오름실, 삼내, 고일, 버드내, 한치
	낙동리	3	낙동1리	거칠현, 전개, 수발, 노름골, 창말
			2리	갬들, 양지마을, 음지마을, 벳둔, 문두골, 의평
			3리	음달(역전), 샘뜰, 선평
	광덕리	2	광덕1리	수령, 영곡, 광방, 화암, 체운, 석대, 수와우
			2리	광탄, 삼종, 송오리, 역전, 갈금, 범소, 서마루
여량면	여량리	5	여량1리	본동 일부, 노고마니, 하곡, 절골
			2리	본동 일부
			3리	본동 일부, 마산치
			4리	본동 일부, 고음동
			5리	가금동
	유천리	3	유천1리	송천, 진평, 싸리골
			2리	지경, 양지마을, 외봉정
			3리	마평, 궁대, 괘재, 하가재
	구절리	3	구절1리	중동 일부, 하절구, 자개, 떡갈밭
			2리	양지마을, 절골, 종양동
			3리	중동 일부, 사달

여량면	남곡리	1	남곡리	고사리, 앞시골, 되골, 북바위, 쇠골
	고양리	1	고양리	임지동, 수무골, 삼가, 큰골, 고창골
	봉정리	1	봉정리	본동, 새치, 발면
북평면	장열리	2	장열1리 2리	본동, 동하지, 바람부리 가평, 하남골
	북평리	6	북평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거무소, 본동(후평), 하동 붉은언덕, 석두 상동 일부 하동 항골, 강선암, 노루목, 아창골, 차랑골, 용소골, 먹골, 약물골 상동 일부
	남평리	3	남평1리 2리 남평3리	용바우, 오음동, 신촌, 새마을, 장승백이 다실동, 한대동, 봉화치, 새리골(새을골), 바드란이, 복지골 문화마을, 농촌 휴양 단지
	문곡리	1	문곡리	본동, 큰골, 적은골, 스므골, 백운동
	나전리	2	나전1리 2리	본동, 야미(배미), 어나전(어뢰), 어도원, 할미골, 명지내, 미루니, 윗터골 장평, 다래골, 세미골, 졸평
	숙암리	1	숙암리	우면주(본동), 대지(큰터), 빗발, 단임, 높은터, 깊은터, 메밀굽이, 소나무터, 장재터, 오장동, 우동골, 절골
임계면	가목리	1	가목리	군대, 가목, 명주목이, 부스베리
	도전리	2	도전1리 2리	외도전 내도전, 너래골, 기추목이, 장아리, 아우라지, 사시내골, 매바위
	직원리	2	직원1리 2리	밭뗏, 군대 일부 구룡동, 노직동, 피원, 당두, 골말, 역마루
	임계리	4	임계1리 2리 3리 4리	점촌, 장성거리, 안검무일부, 관말, 귀새 태봉안, 골말, 도진이, 가슬비 화성, 금방동, 고내 명소, 평양말, 노루마당, 갈마동
	송계리	8	송계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송원, 문둥이골 골말 일부, 옹기장골, 공원묘지골 송계본동 일부 뒷말, 고둑불 안검무 일부, 신현동(새벼리), 골말 일부 송계본동 일부 송계본동 일부 소탄, 소메기골, 도수장골, 골말일부
	봉산리	3	봉산1리 2리 3리	송촌, 점구비, 장찬, 안산 본동, 바위안(암내동) 등봉골, 말루,구미
	낙천리	3	낙천1리 2리 3리	역평, 광산골, 석동거리, 늪밭골, 탑거리, 오목골 일부 미락, 밭미락, 사을기 혈천, 오누골
	용산리	2	용산1리 2리	월탄, 햇골, 오목골 일부, 세류골, 명당바위 용동, 돈들(전평), 범정골
	문래리	3	문래1리 2리 3리	양지, 골지본동, 마태골 하동, 감마동 음지마을, 석둔, 세루골, 장터거리

임계면	덕암리	1	덕암리	작은소래, 큰소래, 새이말, 벳둔골, 구룡동, 무낼골, 동무지, 삼베일, 버실이, 위밀이골, 송이재, 장강촌, 공전리
	고양리	1	고양리	적목동, 새이말, 덕치, 수기동, 하승두, 상승두, 고수말이, 하일, 소라곡, 절골, 다래재, 손오거리
	반천리	2	반천1리 2리	성북, 노일, 도장골 일부, 산성, 여우새, 어전, 월루, 덕시

□ 제안이유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이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장 정수 조정(별표)

- 총 183명 ⇒ 총 184명(증 1명)

나. 조정내역

- 애산 6리 신설

제279회 정선군의회(2022. 03. 31.)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3. 21.)에서 의결된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86호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강원도기부 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정선군 기부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각각 “정선군 기부심사위원회”로, 같은 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강원도기부 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 ---------- ---------- ---------- ---------- 정선군 기부심사위원회---------- ---------.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정선군 기부심사위원회 ---------- ----------.
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 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③ 정선군 기부심사위원회------- ---------- ---------- ---------- 따라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기증품의 취득 심의 주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기증품의 취득 심의 주체 변경(안 제11조제1항~제3항)

- “강원도기부 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정선군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

제279회 정선군의회(2022. 03. 31.)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3. 21.)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87호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25인승 이상 버스”를 “승합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25인승 이상 버스를 말한다. 2.·3. (생 략)	제2조(정의) ----------. 1. ---------- ---------- ---------- ---------- -- 승합차----------. 2.·3.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조례로 정한 지원범위 내에서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으나 공용차량의 정의가 제한적이므로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공용차량의 정의를 개선·보완(안 제2조)

- 공용차량의 정의를 25인승 버스에서 승합차로 변경

제279회 정선군의회(2022. 03. 31.)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4. 15.)에서 의결된 정선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88호

정선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변환하거나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 등”이란 정선군과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선군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상담 및 관련 서비스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3.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5.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수어통역 전문인력 처우 개선
6.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에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 ~ 제4조)

나.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5조)

1)「한국수화언어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상담 및 관련 서비스

2)「한국수화언어법」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3)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5)「한국수화언어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수어통역 전문인력 처우 개선

6)「한국수화언어법」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

다. 포상(안 제6조)

제279회 정선군의회(2022. 03. 31.)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3. 21.)에서 의결된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89호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권활성화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및 위치)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의 범위는 정선군에서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황토약초 게스트하우스
2. 아리랑마을 콘텐츠홀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위탁운영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 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양도의 금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이용료)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이용료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의 기능 및 위치(제3조제2항 관련)

시설명	기 능	위 치
아리랑마을 콘텐츠홀	교육, 전시, 카페, 판매, 홍보, 족욕장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36
황토약초게스트하우스	숙박, 관광안내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38

[별표 2]

시설 이용료(제6조 관련)

황토 약초 게스트하우스					
구분	수량	비수기	성수기	기준인원(명)	비고
4인실	4	30,000원	40,000원	4	가족실
2인실	1	15,000원	30,000원	2	

- 성수기 : 7. 1. ~ 8. 31.(2개월), 그 외는 비수기
- 1인 1박 기준(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 조식 미제공, 실내 금연
- 침구 및 세면도구 : 미제공 원칙(침낭 등 개인 침구류 및 세면도구 지참)
  ※ 현장 별도 요청 시 추가비용 발생
- 제공시설 : 무선인터넷(WIFI), 객실별 에어컨 및 TV, 공용 주방,
  공용 화장실/샤워실(남/녀 별도), 약초음료 자판기,
  아리랑마을 콘텐츠홀 족욕장 1회 이용 가능 (1회당 최대 30분 소요)
- 만 5세 이하는 이용료 면제

아리랑마을 콘텐츠홀 부대시설				
시설명	개소수	이용기간 (1회 사용시간)	이용료	비고
족욕장	8	(30분)	3,000원	
전시·판매공간	1	1개월	100,000원	
강의실	1	1일	50,000원	
스튜디오	1	1일	100,000원	

[별표 3]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제7조 관련)

<table>
<tr><th>구 분</th><th>환급 기준</th></tr>
<tr><td>1. 이용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태풍, 호우, 전염병 등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td><td>○ 이용료 전액 환급</td></tr>
<tr><td>2. 관리·운영 주체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취소</td><td>○ 이용료 전액 환급</td></tr>
<tr><td>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td><td>
<table>
<tr><th colspan="2">비수기(성수기 외)</th><th colspan="2">성수기(7.1. ~ 8.31.)</th></tr>
<tr><th>기준</th><th>환급내용</th><th>기준</th><th>환급내용</th></tr>
<tr><td>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td><td>이용료 전액 환급</td><td>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td><td>이용료 전액 환급</td></tr>
<tr><td>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td><td>이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td><td>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td><td>이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td></tr>
<tr><td>사용 당일 취소</td><td>이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td><td>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td><td>이용료의 40% 공제 후 환급</td></tr>
<tr><td></td><td></td><td>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td><td>이용료의 60% 공제 후 환급</td></tr>
<tr><td></td><td></td><td>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td><td>이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td></tr>
<tr><td></td><td></td><td>사용 당일 취소</td><td>환급 불가</td></tr>
</table>
</td></tr>
</table>

□ 제안이유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문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기능 및 위치(안 제3조)

1) 황토약초 게스트하우스, 봉양5길 38

2) 아리랑마을 콘텐츠홀, 봉양5길 36

다. 위탁운영 등(안 제4조)

제279회 정선군의회(2022. 03. 31.)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3. 21.)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90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2]

시설사용료(제12조의2 관련)

1. 자연체험시설

가. 시설별 이용요금

(단위 : 원)

시설명칭	스카이워크 전망대	짚와이어	짚라인	짚코스터	어드벤처
개별이용	2,000	35,000	10,000	13,000	10,000
글램핑숙박시	무료	28,000	8,000	10,000	8,000

※ 청소년(어린이 포함)의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료 : 1,000원
※ 짚와이어 이용자의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료 : 무료

나. 종합이용요금

(단위 : 원)

구 분	올패키지	짚패키지	비 고
글램핑숙박자	46,000	41,000	
글램핑비숙박자	51,000	46,000	

※ 「올패키지」는 가항의 자연체험시설 전체 사용(1회)을 뜻함
※ 「짚패키지」는 가항중 어드벤처시설을 제외한 자연체험시설 전체 사용(1회)을 뜻함

2. 야영장

가. 이용요금

(단위 : 원)

시설명		비수기	성수기	비 고
글램핑	대형	120,000	160,000	※ 성수기 : 매년 5월~10월
	소형	90,000	130,000	

나. 주의사항

1) 시설사용 기준(1일)
o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일 미만으로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 추가 징수

2). 캠핑장 내 전기사용
o 소형가전(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 총 합계 500W 미만) 사용 가능
- 단,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 사용금지

□ 제안이유

물가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병방산 군립공원 글램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글램핑장의 이용요금을 인상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병방산 군립공원 글램핑장 이용요금 인상(별표 2)

시설명		비수기	성수기
글램핑	대형	120,000	160,000
	소형	90,000	130,000

제279회 정선군의회(2022. 03. 31.)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3. 21.)에서 의결된 정선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91호

정선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다.

제3조(위촉)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나.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하고 그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가. 안전보안관 위촉(안 제3조)

나.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안 제4조)

다.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안 제5조)

라. 안전보안관의 활동(안 제6조)

마.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등(안 제7조)

제279회 정선군의회(2022. 03. 31.)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3. 21.)에서 의결된 정선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92호

정선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경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경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과 조화로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아름답고 쾌

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 모의실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불일치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사업자 등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로(街路), 광장, 수변공간(水邊空間)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교량 등 거대 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 기준 운용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알리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호수·하천 등 수변공간의 경관개선사업
3.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의 설치 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5. 그 밖에 경관 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비용(재원) 조달계획

2. 사업 시행 후의 모의실험
3. 기대효과
4. 연차별 집행계획
5. 사업관련 경관계획도서
6. 그 밖의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관사업 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4.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5.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정선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선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건축·주택·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경관사업 시행자
5.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군 소속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15조(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외부 색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된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로 시설면적 3,300㎡ 이상인 시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의 높이 또는 용적률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사업면적 또는 사업구간이 10분의 1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
3. 당초 협의된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군 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 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규모가 10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지상 10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한다.

1.「정선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건축물

2.「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장

5. 설계공모 등을 통하여 디자인이 결정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경관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이 변경되는 부분이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정선군 경관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제9조에 따른다.

제28조(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경관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는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군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

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또는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소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1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지원 및 승인에 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군수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2조(심의신청) ① 제31조에 따라 경관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 심의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2. 경관 계획서
3. 계획도면
4. 조감도 또는 조감 사진
5. 조성 후 경관 모의실험
6. 국토교통부 고시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른 서류

② 제1항의 경관 심의 신청 서류의 작성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장기 미래계획은 기본구상안이 나온 초안 단계
2. 시설물 설치사업은 외관 디자인 확정 및 실시설계 이전 단계

제33조(심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정선군 건축 조례」에 따라 정선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2.「정선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정선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도시계획 시설 및 사업

제34조(포상) 군수는 경관 형성에 기여하거나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수립제안서

제안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남 / 여)
	주소(사무실) (전화:)	
제안 구역 개요	구역명	
	위 치	
	면 적	
	용도지역	
	거주인구 및 세대수	

「경관법」 제8조제1항 및 「정선군 경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경관계획수립제안의 내용에 관한 서류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 모의실험 5. 그 밖에 경관계획수립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 계획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남 / 여)
	주소(사무실) (전화:)	
경관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면적)	
	사업주체	
	소요예산	

「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정선군 경관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사업의 기대효과 등

■ [별지 제3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남 / 여)
	주소(사무실) (전화:)	
경관협정 개요	경관협정 명칭	
	경관협정 위치	
	유효기간	
	주요협정내용	
	위반 시 제재사항	
	협정체결자 수	

「경관법」 제20조제2항 및 「정선군 경관 조례」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회원(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4호서식]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

신청인 (승계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남 / 여)
	주소(사무실) (전화:)	
피승계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남 / 여)
	주소(사무실) (전화:)	
	승계내용	
승계사유		

「경관법」 제24조제2항 및 「정선군 경관 조례」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별지 제5호서식]

경관 심의 신청서

사업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남 / 여)	
	주소(사무실) (전화:)		
작성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남 / 여)	
	주소(사무실) (전화:)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위치		
	부지면적	사업량	
	용 도	사업기간	공사비
	사업내용		

「경관법」 제30조 및「정선군 경관 조례」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선군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경관 계획서 2. 계획도면 3. 조감도 또는 조감 사진 4. 조성 후 경관 모의실험 5. 국토교통부고시「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른 서류

□ 제안이유

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례위임사항에 대하여 규정

나.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위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경관심의 업무추진

□ 주요내용

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등(안 제25조)

1) 당초

-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총사업비 100억 이상인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

2) 변경

-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로 시설면적 3,300㎡ 이상인 시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

나.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안 제26조)

1) 당초

-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이 되는 건축물 포함)

2) 변경

-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이 되는 건축물 포함)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규모가 10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지상 10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다. 정선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신청(안 제31조, 제32조)

- 국토교통부 고시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른 서류(서식 서류 구체화)

제279회 정선군의회(2022. 03. 31.)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3. 21.)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93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 제1호에 따른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일단의 사면길이가 40미터 이상 되는 구간이 포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를 “경사도가 20도(36퍼센트) 미만인 토지(다만, 군수가 개발행위의 특성 및 지형여건상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구계획”을 “복구계획(횡단도 상의 부지경사 2퍼센트 이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은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인정공고 또는 결정·지정 및 기본계획 노선으로 고시된 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4호 이하는 300미터 이내)
3. 자연취락지구 및 관광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발전시설 부지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유지(다만, 발전시설이 상호 접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와 이격 거리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하고,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

상의 경계 울타리를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수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14조에 따른 건축물 중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하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수평투영 면적이 지붕 및 옥상 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하수도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나 홍수나 폭설로 인한 고립위험 지역 또는 제4호 다목에 따른 도로로서 토지사용권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 등의 경우에는 제62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을 “지역”으로 한다.

별표 6 제13호 중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을 “제21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 한다.

별표 7 제13호 중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21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 한다.

별표 16 제10호 중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7 제12호 중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2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 한다.

별표 19 제9호 중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21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 한다.

별표 20 제12호 중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2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 한다.

별표 22 제8호 중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제2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 한다.

별표 23 제5호 중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을 “제21호 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 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일단의 사면길이가 40미터 이상 되는 구간이 포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 또는 토지이용복구계획의 경사도에 따른다.	2. 경사도가 20도(36퍼센트) 미만인 토지(다만, 군수가 개발행위의 특성 및 지형 여건상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 절토·성토로 인한 비탈면은 계단형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③ ---------- 복구계획(횡단도 상의 부지경사 2퍼센트

현 행	개 정 안
외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3-4-2)계획기준(부지조성)을 준용한다.	이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 시설)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인정공고 또는 결정·지정 및 기본계획 노선으로 고시된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4호 이하는 300미터 이내) 3. 자연취락지구 및 관광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 설>	제21조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은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인정공고 또는 결정·지정 및 기본계획 노선으로 고시된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4호 이하는 300미터 이내) 3. 자연취락지구 및 관광지 경계

현 행	개 정 안
	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발전시설 부지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유지(다만, 발전시설이 상호 접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와 이격 거리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하고,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수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14조에 따른 건축물 중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하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수평투영면적이 지붕 및 옥상 면적을 넘

현 행	개 정 안
	지 아니할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5년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 및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 ---------- ---------- ---------- ---------- ---------- ---------- ---------- ---------- ----------. 다만, 상·하수도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나 홍수나 폭설로 인한 고립위험 지역 또는 제4호 다목에 따른 도로로서 토지사용권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 등의 경우에는 제62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건축법」제14조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 ------- 지역---------- ---------- ----------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별표 6] <개정 2016.6.9., 2019.06.26>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4호 관련)

(영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너비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5호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별표 5 제10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 <개정 2016.6.9., 2019.06.26., 2021.03.0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5호 관련)

(영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너비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6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별표 5 제10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

슷한 것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개정 2016.10.20.>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4호 관련)

(영 별표 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신설 2016.10.20.>

[별표 17] <개정 2016.6.9.>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5호 관련)

(영 별표 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개정 2016.6.9.,2016.10.20.>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7호 관련)

(영 별표 1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 및 고등학교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10.20.>

[별표 20] <개정 2016.6.9., 2019.06.26>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8호 관련)

(영 별표 1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 <개정 2016.6.9., 2019.06.26>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20호 관련)

(영 별표 2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농지법」,「산지관리법」또는「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3] <개정 2016.6.9., 2019.06.26>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21호 관련)

(영 별표 2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아목에 해당하는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개정 및 개발행위허가기준(발전시설, 건축물)의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명시(안 제15조의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이 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철거 조건)에 대하여 일정 기간(3년 이내) 설치 가능함을 명시

나.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산정 및 복구계획 명확화(안 제21조)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명확화하고, 우수 유출시간 저감을 위한 횡단 계획 명시

다. 건축물의 옥상, 지붕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안 제21조의2)

건축물의 옥상,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기준 및 특정 목적의 건축물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요건 명시

라.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요건 명시(안 제22조)

상·하수도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나, 홍수나 폭설로 인한 고립위험지역, 또는 토지 사용권의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한 건축요건 명시

마. 별표 개정(안 별표 6, 별표 7,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별표 20, 별표 22, 별표 23)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보전·생산녹지 지역, 보전·생산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동·식물관련시설 입지 기준 명확화

규 칙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3. 21.)에서 의결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67호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정선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의 개정) 정선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정선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개정) 정선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3조”를 “「지방자치법」 제29조”로 한다.

제3조(「정선군사무인계인수규칙」의 개정) 정선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를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정선군수”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4조(「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 제131조”로 한다.

제5조(「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본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공공직업훈련시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공공직업훈련시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6조(「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의 개정) 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 중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소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정선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담당관·과장이 대행 한다.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정선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기안책임 및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29조 ----------.

제3조(「정선군사무인계인수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 정선군수---------- ---------- ---------- ---------- ----------.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 ---------- ---------- -. ---------- ----------.
1. 군수	1.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면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하며, 읍·면에는 부읍장·부면장을 둘 수 있다. 1. ~ 3. (생 략)	제13조(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 ----------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교육훈련보조금)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제6조의2(교육훈련보조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 ---------- -- 공공직업훈련시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표 5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①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조례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여 신규 채용 후 위탁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까지 최고 5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6. ---------- ---------- ---------- ---------- ---------- ---. ----------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 공공직업훈련시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현 행	개 정 안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8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기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u>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u>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8조(채권의 독촉) ---------- ---------- ---------- ---------- <u>소재</u>--------- ---------- ----------.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인용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정선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등 6개 규칙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전부개정 2021.1.12.)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3. 21.)에서 의결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68호

정선군 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선군 반의 명칭(자연지명) 및 관할구역

리반 명칭			자연지명		관 할 구 역	
정선읍	봉양 1리	제 1반	정선오일장 상동	【마을】 【마을】	봉양 1리	제 1반
	"	제 2반	상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상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상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상동	【마을】	"	제 5반
	"	제 6반	상동	【마을】	"	제 6반
	"	제 7반	상동	【마을】	"	제 7반
	"	제 8반	상동	【마을】	"	제 8반
	"	제 9반	정선오일장	【마을】	"	제 9반
	"	제 10반	정선오일장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정선오일장	【마을】	"	제 11반
	"	제 12반	정선오일장	【마을】	"	제 12반
	"	제 13반	상동	【마을】	"	제 13반
	"	제 14반	상동	【마을】	"	제 14반
	"	제 15반	상동	【마을】	"	제 15반
	봉양 2리	제 1반	상동 호선역터 새청거리 소두둑	【마을】 【마을】 【마을】 【마을】	봉양 2리	제 1반
	"	제 2반	상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정선오일장	【마을】	"	제 3반
	"	제 4반	상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상동	【마을】	"	제 5반
	"	제 6반	상동	【마을】	"	제 6반
	"	제 7반	상동	【마을】	"	제 7반
	"	제 8반	상동	【마을】	"	제 8반
	"	제 9반	상동	【마을】	"	제 9반
	"	제 10반	상동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상동	【마을】	"	제 11반
	"	제 12반	상동	【마을】	"	제 12반
	"	제 13반	삼우주택	【마을】	"	제 13반
	봉양 3리	제 1반	중동 배터거리 비석거리	【마을】 【마을】 【마을】	봉양 3리	제 1반
	"	제 2반	중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중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중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중동	【마을】	"	제 5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관 할 구 역		
정선읍	봉양 3리	제 6반	중동	【마을】	봉양 3리	제 6반	
	"	제 7반	중동	【마을】	"	제 7반	
	"	제 8반	중동	【마을】	"	제 8반	
	"	제 9반	중동	【마을】	"	제 9반	
	"	제 10반	중동	【마을】	"	제 10반	
	봉양 4리	제 1반	하동	【마을】	봉양 4리	제 1반	
	"	제 2반	하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하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하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하동 우전거리	【마을】 【마을】	"	제 5반	
	"	제 6반	하동	【마을】	"	제 6반	
	"	제 7반	하동 서낭뒷골 소금강	【마을】 【골짜기】 【산】	"	제 7반	
	"	제 8반	하동	【마을】	"	제 8반	
	"	제 9반	하동 비룡산(飛鳳山)	【마을】 【산】	"	제 9반	
	봉양 5리	제 1반	녹도	【마을】	봉양 5리	제 1반	
	"	제 2반	녹도 배나들이 솔솔밭	【마을】 【나루】 【거리】	"	제 2반	
	"	제 3반	녹도	【마을】	"	제 3반	
	"	제 4반	녹도	【마을】	"	제 4반	
	"	제 5반	녹도	【마을】	"	제 5반	
	"	제 6반	녹도	【마을】	"	제 6반	
	"	제 7반	녹도	【마을】	"	제 7반	
	"	제 8반	녹도	【마을】	"	제 8반	
	"	제 9반	녹도	【마을】	"	제 9반	
	"	제 10반	녹도	【마을】	"	제 10반	
	봉양 6리	제 1반	관음동(觀音洞), 진꼬리, 탑골, 작벌 의상대, 오리장 너우라지골 송정암(訟停巖)	【마을】 【골짜기】 【바위】	봉양 6리	제 1반	
	"	제 2반	생탄(生呑), 거릿말 말바우, 칠성바우 역말께	【마을】 【바위】 【고개】	"	제 2반	
	"	제 3반	동골,동곡(動谷),안골 굼등,분부산 배미골	【마을】 【산】 【골짜기】	"	제 3반	
	"	제 4반	누리대,세대,회꿈골 골안골,막골,지동골	【마을】 【골짜기】	"	제 4반	
	봉양 7리	제 1반	적거리(積巨里)	【마을】	종전 봉양 7리	제 1반, 제 2반	
	"	제 2반	향교앞마을 정선향교 상동나루터	【마을】 【향교】 【나루】	종전 "	제 3반	
	"	제 3반	적거리	【마을】	종전 "	제 4반	
	"	제 4반	상동	【마을】	종전 "	제 5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관 할 구 역		
정선읍	봉양 8리	제 1반	녹도	【마을】	봉양 8리	제 1반	
	"	제 2반	녹도	【마을】	"	제 2반	
	"	제 3반	녹도	【마을】	"	제 3반	
	"	제 4반	녹도	【마을】	"	제 4반	
	"	제 5반	녹도	【마을】	"	제 5반	
	"	제 6반	녹도	【마을】	"	제 6반	
	"	제 7반	녹도	【마을】	"	제 7반	
	"	제 8반	녹도	【마을】	"	제 8반	
	"	제 9반	녹도	【마을】	"	제 9반	
	봉양 9리	제 1반	녹도	【마을】	봉양 9리	제 1반	
	"	제 2반	녹도	【마을】	"	제 2반	
	"	제 3반	녹도	【마을】	"	제 3반	
	"	제 4반	녹도	【마을】	"	제 4반	
	"	제 5반	녹도	【마을】	"	제 5반	
	"	제 6반	녹도	【마을】	"	제 6반	
	"	제 7반	녹도	【마을】	"	제 7반	
	"	제 8반	녹도	【마을】	"	제 8반	
	봉양 10리	제 1반	봉양주공아파트	【마을】	봉양10리	제 1반	
	〃	제 2반	봉양주공아파트	【마을】	"	제 2반	
	〃	제 3반	봉양주공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봉양주공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봉양주공아파트	【마을】	"	제 5반	
	〃	제 6반	봉양주공아파트	【마을】	"	제 6반	
	〃	제 7반	봉양주공아파트	【마을】	"	제 7반	
	북실 1리	제 1반	북실, 북포동(北窠洞), 용담(龍潭)	【마을】	종전 북실 1리	제 1반	
	"	제 2반	북실	【마을】	"	제 2반	
	"	제 3반	강원연립	【마을】	"	제 3반	
	"	제 4반	북실 조양산(朝陽山),남산(南山), 대음산(大陰山),발봉(髮峰)	【마을】 【산】	"	제 4반	
	"	제 5반	오암(烏岩)	【마을】	"	제 5반	
	"	제 6반	북실	【마을】	"	제 6반	
	"	제 7반	태남빌라	【마을】	"	제 7반	
	"	제 8반 (신설)	북실마루아파트	【마을】	종전 "	제1반(북실마루아파트 101동 1~3호라인)	
	"	제 9반 (신설)	북실마루아파트	【마을】	종전 "	제1반(북실마루아파트 101동 4~7호라인)	
	"	제10반 (신설)	북실마루아파트	【마을】	종전 "	제1반(북실마루아파트 102동 1~4호라인)	
	북실 2리	제 1반	오암(烏岩)	【마을】	북실 2리	제 1반	
	"	제 2반	올창바우 재피골,선들바우골	【마을】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가마실,삼거리,넘말 맹이골,쥐담골,코거리재,샛골, 삼부금골,대장터골,핏골,안골, 몰넝이골 산부금,하너미, 너툰이재	【마을】 【골짜기】 【산】 【고개】	"	제 3반	
	"	제 4반	가마실,삼거리,넘말	【마을】	"	제 4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관 할 구 역	
정선읍	북실 3리	제 1반	옻나무배기 뒷두둑골	【마을】 【골짜기】	북실 3리	제 1반
	"	제 2반	용담	【마을】	"	제 2반
	"	제 3반	용담,버드나무배기 멀구치,뺑뺑이재, 늦둥재 병방치(丙方峙)	【마을】 【고개】 【산】	"	제 3반
	"	제 4반	오암(烏岩)	【마을】	"	제 4반
	"	제 5반	아리랑아파트	【마을】	"	제 5반
	"	제 6반	아리랑아파트	【마을】	"	제 6반
	"	제 7반	아리랑아파트	【마을】	"	제 7반
	북실 4리	제 1반	북실아파트	【마을】	북실 4리	제 1반
	"	제 2반	북실아파트	【마을】	"	제 2반
	"	제 3반	북실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북실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북실아파트	【마을】	"	제 5반
	"	제 6반	용담,싸내,살개벌	【마을】	"	제 6반
	북실 5리	제 1반	현대아파트	【마을】	북실 5리	제 1반
	"	제 2반	현대아파트	【마을】	"	제 2반
	"	제 3반	현대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현대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현대아파트	【마을】	"	제 5반
	"	제 6반	미소빌아파트	【마을】	"	제 6반
	"	제 7반	미소빌아파트	【마을】	"	제 7반
	"	제 8반	현대아파트	【마을】	"	제 8반
	"	제 9반	미소빌아파트	【마을】	"	제 9반
	"	제 10반	미소빌아파트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미소빌아파트	【마을】	"	제 11반
	덕송 1리	제 1반	돌다리 굴등, 꽃두둑	【마을】 【산】	덕송 1리	제 1반
	"	제 2반	납닥골 여개	【마을】 【전답】	"	제 2반
	"	제 3반	방축맥이,골안 산지당골,절골, 큰설매구렁, 갈번지,민둥산 수배령,방아재,무네미	【마을】 【골짜기】 【산】 【고개】	"	제 3반
	"	제 4반	내반점(內半點), 지르네미 반점재[半點峙], 지름재 도투골 찍어다먹은뫼,픗대봉	 【마을】 【고개】 【골짜기】 【산】	"	제 4반
	"	제 5반	외반점(外半點)	【마을】	"	제 5반
	"	제 6반	외반점(外半點)	【마을】	"	제 6반
	덕송 2리	제 1반	송오(松五)	【마을】	덕송 2리	제 1반
	"	제 2반	송오(松五) 남산(南山) 뒷재 송오나루	【마을】 【산】 【고개】 【나루】	"	제 2반
	"	제 3반	다래 장등,뒷재,그물목이 큰구렁	【마을】 【산】 【골짜기】	"	제 3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관 할 구 역	
정선읍	애산 1리	제 1반	우묵골 【마을】 웃모태이 【골짜기】 범바우 【바위】 범바우소 【소】 철미산(鐵美山),애산봉 【산】 성안 【성곽】	애산 1리	제 1반
	"	제 2반	병목 【마을】 거리모태이,아랫모태이【마을】 철미재 【고개】 둔덕 【산】	"	제 2반
	"	제 3반	엇내 【마을】 어천(漁川) 【하천】	"	제 3반
	"	제 4반	엇내,남산밑 【마을】 화약고골,큰골,작은골【골짜기】	"	제 4반
		제 5반	신촌 【마을】	"	제 5반
	"	제 6반	신촌 【마을】	"	제 6반
	애산 2리	제 1반	녹도(綠島), 섬버덩,큰섬, 작은섬,아랫녹도【마을】	애산 2리	제 1반
	"	제 2반	녹도(綠島) 【마을】	"	제 2반
	"	제 3반	녹도(綠島) 【마을】	"	제 3반
	"	제 4반	역전 【마을】	"	제 4반
	"	제 5반	녹도(綠島) 【마을】	"	제 5반
	"	제 6반	역전 【마을】	"	제 6반
	"	제 7반	역전 【마을】	"	제 7반
	"	제 8반	녹도(綠島) 【마을】	"	제 8반
	"	제 9반	녹도(綠島) 【마을】	"	제 9반
	"	제 10반	역전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녹도(綠島) 【마을】	"	제 11반
	애산 3리	제 1반	오반리(五半里),삼거리, 배나무골,삼거리 【마을】 둔전골,쉰담배기골,느래이골, 장아골,빈지골, 이슬재골 【골짜기】 올창바우 【바위】 쇠직산,너래이말랑,큰봉【산】	애산 3리	제 1반
	"	제 2반	안질골,오반동골 【골짜기】 숯재이고개 【고개】 새덕 【전답】	"	제 2반
	애산 4리	제 1반	구미동 【마을】	애산 4리	제 1반
	"	제 2반	구미동 【마을】 느래이골,방골 【골짜기】 정선역 【역】	"	제 2반
	"	제 3반	개끝,구암동 【마을】 개끝나루 【나루】 두건이골,방골【골짜기】	"	제 3반
	"	제 4반	이절 【마을】 고사나루 【나루】 오전이재 【고개】 합금천(合衿川) 【하천】	"	제 4반
	애산5리	제 1반	역전 【마을】	애산 5리	제 1반
		제 2반	역전 【마을】	"	제 2반
		제 3반	녹도(綠島) 【마을】	"	제 3반
		제 4반	녹도(綠島) 【마을】	"	제 4반
		제 5반	녹도(綠島) 【마을】	"	제 5반
		제 6반	녹도(綠島) 【마을】	"	제 6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관 할 구 역	
정선읍	애산 6리 (신설)	제 1반	웃묵골 【마을】 웃모태이 【골짜기】 범바우 【바위】 범바우소 【소】 철미산(鐵美山),애산봉 【산】 성안 【성곽】	애산 6리	제 1반
	"(신설)	제 2반	아리채101동 【마을】	"	제 2반
	"(신설)	제 3반	아리채102동,103동 【마을】	"	제 3반
	"(신설)	제 4반	아리채201동 【마을】	"	제 4반
	"(신설)	제 5반	아리채301동 【마을】	"	제 5반
	"(신설)	제 6반	아리채401동 【마을】	"	제 6반
	신월 1리	제 1반	와평(瓦坪) 【마을】 철미재 【고개】 철산골,한골 【골짜기】	신월 1리	제 1반
	"	제 2반	와평(瓦坪) 【마을】 까칠재 【산】	"	제 2반
	"	제 3반	와평(瓦坪) 【마을】 메내기재 【고개】	"	제 3반
	"	제 4반	와평(瓦坪),드름터 【마을】 아음대(野陰垈),남산 골매채기재 【마을】	"	제 4반
	신월 2리	제 1반	월통(月通) 【마을】 한재 【고개】 새기골 【골짜기】 앙월산(仰月山) 【산】	신월 2리	제 1반
	"	제 2반	월통(月通) 【마을】 송골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작은모양골,큰모양골 【마을】 엇재,느진목이 【고개】 국시댕이,기우산(祈雨山) 화상봉 【산】 칠성백이 【도로】	"	제 3반
	"	제 4반	삼거리,주막거리,안질골 【마을】 새터,자진메기 【산】 박달골,은점골 【골짜기】 지르메재,소재, 쇄재【고개】	"	제 4반
	"	제 5반	새터골 【마을】 가내골,가느골,덕골, 퉁골,코거리,어둔골 【골짜기】 새덕재,문두치(門頭峙) 【고개】 새덕 【전답】 감투봉 【산】	"	제 5반
	덕 우 리	제 1반	큰말,대촌(大村),잣드루 【마을】 구운병,옥순봉,진등 【산】 언내평 【전답】 반선정(伴仙亭) 【정자】 구영소 【소】	덕 우 리	제 1반
	"	제 2반	백우담(白雨潭),백오담(白烏潭), 박두백우담,버들앗,우금골,웃골, 덕우삼거리,거어리 【마을】 쇄재 【고개】 박달고데이,운금장, 취적봉(吹笛峰) 【산】	"	제 2반
	"	제 3반	덕산기(德山基),미네미,도사골, 도사곡(道士谷),샛말 【마을】 웃구진베리,구진베리,웃고개, 수리봉,송낙봉 【산】 뒷버덩 【전답】 어르네미골,샛가재미골,큰도사골, 영애골,돌목재골,문안골, 스무골,맷골 【골짜기】 서낭고개 【고개】	"	제 3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정선읍	여 탄 리	제 1반	역둔(驛屯),역둔모태이 【마을】 잣드루 【전답】	여 탄 리	제 1반
	"	제 2반	동메 【산】 노루고개 【고개】 망골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삼거리,음지말,양지마을,화잣골, 동막(東幕),화작동,중북골, 원터거리 【마을】 갈미봉,무른재 【산】 솔안골,큰사태골,분태골,둔지골, 큰골,작은중북골,앞골, 앞질네미 【골짜기】 양지뜰 【전답】 큰재,마치(馬峙),치재, 돌골네미 【고개】	"	제 3반
	"	제 4반	삼거리,음지말,양지마을,화잣골, 동막(東幕),화작동,중북골, 원터거리 【마을】	"	제 4반
	회동 1리	제 1반	다래들,월평(月坪) 【마을】 달구봉 【산】 가느골,안골 【골짜기】 동산재,범바우재 【고개】	회동 1리	제 1반
	"	제 2반	다래들 【마을】 앞산 【산】 텨럭위 【전답】 아홉사리골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다래들 【마을】	"	제 3반
	"	제 4반	다래들 【마을】	"	제 4반
	회동 2리	제 1반	음지마을 【마을】	회동 2리	제 1반
	"	제 2반	음지마을 【마을】 넙덕골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양짓말 【마을】	"	제 3반
	"	제 4반	양짓말 【마을】 새순지 【전답】 뒷골 【골짜기】	"	제 4반
	"	제 5반	양짓말 【마을】	"	제 5반
	"	제 6반	청량골어귀,새판,늑평,막동 해수터,말목이 【마을】 샘골,세곡(細谷),어은골,바른골 덕두골,지레이골 사실골 【골짜기】 앞덕,가리왕산 【산】 벽파령(碧波嶺) 말목이재 【고개】	"	제 6반
	용탄 1리	제 1반	귀리벌 【마을】	용탄 1리	제 1반
	"	제 2반	노미,머구숲 【마을】 큰골 【골짜기】 새가산 【산】 범여울 【여울】	"	제 2반
	"	제 3반	안말,삼거리 【마을】 안말나루 【나루】	"	제 3반
	"	제 4반	구재,새마을 【마을】	"	제 4반
	"	제 5반	가느골 【마을】 안배미골 【골짜기】 메골재 【산】	"	제 5반
	"	제 6반	골어구 【마을】 박달재 【산】	"	제 6반
	"	제 7반	비룡동(飛龍洞) 【마을】 오두치 【고개】 안푸제리골 【골짜기】 수리봉 【산】 탑거리 【도로】	"	제 7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정선읍	용탄 1리	제 8반	실룬,어용골	【마을】	"	제 8반
	용탄 2리	제 1반	벽탄(碧灘),넘마을 돌고지 노루머리 고갯재	【마을】 【산】 【고개】	용탄 2리	제 1반
	"	제 2반	벽탄(碧灘),벽탄역터	【마을】	"	제 2반
	"	제 3반	다래들 새덕골	【마을】 【골짜기】	"	제 3반
	"	제 4반	다래들 지름재	【마을】 【고개】	"	제 4반
	용탄 3리	제 1반	터골 갱금산,놈딩이 자랑골,도애골 도태골	【마을】 【산】 【골짜기】	용탄 3리	제 1반
	"	제 2반	주막거리 샛골,옻나무골 큰성마령골	【마을】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거리마을,행매동(行邁洞),원골 행매원(行邁院) 샛골,왕태골 작은성마령골 운고개 성마령(星摩嶺)	【마을】 【골짜기】 【고개】	"	제 3반
	"	제 4반	안마을 아홉사리,까치고개	【마을】 【고개】	"	제 4반
	광하 1리	제 1반	광석(廣石) 광석나루	【마을】 【나루】	광하 1리	제 1반
	"	제 2반	군언,모마루 버들치 도깨비굴 열두절,수기대	【마을】 【고개】 【동굴】 【하천】	"	제 2반
	"	제 3반	우뚜르	【마을】	"	제 3반
	"	제 4반	송단(松丹),재룬골	【마을】	"	제 4반
	"	제 5반	송단(松丹),재룬골	【마을】	"	제 5반
	광하 2리	제 1반	앞골,빈지막,세집맹이 상산	【마을】 【산】	광하 2리	제 1반
	"	제 2반	망하(望河) 방뒤산,새덕산	【마을】 【산】	"	제 2반
	"	제 3반	망하(望河) 양치재	【마을】 【고개】	"	제 3반
	광하 2리	제 4반	여곡(余谷),양지마을,음달터 남은골 노적봉,덕새,목재 살개봉 자운치,새재 때골,방골	【마을】 【산】 【고개】 【골짜기】	광하 2리	제 4반
	"	제 5반	소탄(召呑) 웃골,무난골 대목골 내멜지렝이	【마을】 【골짜기】 【도로】	"	제 5반
	"	제 6반	마전골,도장골,고라데이골 산지골,밤나무골 마전(麻田) 새덕 마전령(麻田嶺) 비행기재	【골짜기】 【마을】 【둔지】 【고개】	"	제 6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정선읍	귤 암 리	제 1반	상귤화(上橘花) 개금벌 【마을】 개금골,맹이골 【골짜기】	귤 암 리
	"	제 2반	상귤화(上橘花) 【마을】 뒷덕마산 【산】 상정바우골 【골짜기】	"
	"	제 3반	하귤화(下橘花) 개바우 【마을】 장구메기 【도로】 진등 【산】 귤화나루터 【나루】	"
	"	제 4반	옷바우 【바위】 수리봉,나팔봉 【산】 큰골,서누래 【골짜기】 양치(楊峙) 【고개】	"
	"	제 5반	새덕골 동무지(童舞地) 【마을】 설피골,마전이골, 나발골,달개골, 제당골 【골짜기】 동무지재 【고개】	"
	"	제 6반	웃만지산,아랫만지산, 새맥이,덕우리 【마을】 만지산(萬支山) 【산】 배나무골,느태골, 안둠새이,바깥둠새이 피골 【골짜기】 솔미기 【고개】	"
	가 수 리	제 1반	수미[水旀] 【마을】 수미나루 【나루】 납닥소 【소】 붉은병,말짝베리 오송적벽(五松赤壁) 【산】 산자골 【골짜기】	가 수 리
	"	제 2반	수미[水旀],갈매, 구수매기,갈매동우리 물밑동우리 【마을】 너툰이재 굴거리재 【고개】 문안골,그물매기 회침이골 【골짜기】 지장천(地藏川) 【하천】 가둔지 【둔지】 황마루,갈미벌 안동우리 【전답】 갈미소 【강】	"
	"	제 3반	북대(北垈) 【마을】 운고개 【고개】 어선골[漁船谷],가느골 다래골 【골짜기】 도둑구지 【산】 산지기 【전답】	"
	"	제 4반	가탄(佳灘),웃말,아랫말, 새터,유지(有池) 【마을】 노장골,큰싸리밭골, 수링이골 【골짜기】 가탄나루 【나루】 달구봉,유지등,예봉 【산】 꼬부랑재,트리재 【고개】 유지구덩 【전답】	종전 "
	"	제 5반	해매,둔지마을 【마을】 해매나루 【나루】 느진맥이,돌도끼산 【산】 삼형제바우 【바위】 수갈령골 【골짜기】	종전 "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고한읍	고한 1리	제 1반	만항 【마을】 함백산(咸白山) 【산】	고한 1리	제 1반
	"	제 2반	만항,평화촌 【마을】 만항재,능목재 【고개】 제당골,강동재,산막골,쥐정골, 숨골,적낭골 【골짜기】 뾰족산 【산】	"	제 2반
	고한 2리	제 1반	두문동(杜門洞), 대두문동 【마을】	고한 2리	제 1반
	"	제 2반	대두문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대두문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두문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두문동 【마을】 두문동재 【고개】 두문동재터널 【터널】 금대봉(金臺峯), 천의봉(天倚峯) 【산】	"	제 5반
	고한 3리	제 1반	소두문동(小杜門洞) 【마을】 마당목 【고개】 큰골,너실목 【골짜기】	고한 3리	제 1반
	"	제 2반	자레바우,소두 【마을】 교틀재 【고개】	"	제 2반
	"	제 3반	싸리덕 【골짜기】	"	제 3반
	고한 4리	제 1반	박심마을 【마을】	고한 4리	제 1반
	"	제 2반	박심,삼봉(三俸), 성황당마을 【마을】 국시당 【성황당】 팍심이재,박심고개 【고개】	"	제 2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고한읍	고한 5리	제 1반	상갈래	【마을】	고한 5리	제 1반
	"	제 2반	상갈래	【마을】	"	제 2반
	"	제 3반	절골	【마을】	"	제 3반
	"	제 4반	스카이빌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삼거리	【마을】	"	제 5반
	"	제 6반	절골아래	【마을】	"	제 6반
	고한 6리	제 1반	파인앤유	【마을】	고한 6리	제 1반
	"	제 2반	파인앤유	【마을】	"	제 2반
	"	제 3반	파인앤유	【마을】	"	제 3반
	"	제 4반	파인앤유	【마을】	"	제 4반
	"	제 5반	파인앤유	【마을】	"	제 5반
	"	제 6반	중갈래삼거리	【마을】	"	제 6반
	"	제 7반	더좋은오피스텔	【마을】	"	제 7반
	"	제 8반	중앙파크빌	【마을】	"	제 8반
	고한 7리	제 1반	중갈래	【마을】	고한 7리	제 1반
	"	제 2반	중갈래	【마을】	"	제 2반
	"	제 3반	중갈래	【마을】	"	제 3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고한 8리	제 1반	해피아리아파트 【마을】	고한 8리 제 1반
"	제 2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2반
"	제 3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5반
"	제 6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6반
"	제 7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7반
"	제 8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8반
"	제 9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9반
″	제 10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11반
고한 9리	제 1반	대원아파트 【마을】	고한 9리 제 1반
"	제 2반	양지마을,고한연립주택, 당목,웃당목 【마을】	" 제 2반
"	제 3반	중갈래 【마을】	" 제 3반
"	제 4반	중갈래 【마을】	" 제 4반
"	제 5반	중갈래 【마을】	" 제 5반
"	제 6반	중갈래 【마을】	" 제 6반
고한 10리	제 1반	역전 【마을】	고한10리 제 1반
"	제 2반	역전 【마을】	" 제 2반
"	제 3반	역전 【마을】	" 제 3반
"	제 4반	역전 【마을】	" 제 4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고한읍	고한 11리	제 1반	막골	【마을】	고한11리	제 1반
	"	제 2반	막골	【마을】	"	제 2반
	"	제 3반	막골 꽃대봉,백운산	【마을】 【산】	"	제 3반
	고한 12리	제 1반	하갈래	【마을】	고한12리	제 1반
	"	제 2반	하갈래	【마을】	"	제 2반
	"	제 3반	하갈래	【마을】	"	제 3반
	"	제 4반	하갈래	【마을】	"	제 4반
	"	제 5반	하갈래	【마을】	"	제 5반
	"	제 6반	하갈래	【마을】	"	제 6반
	고한 13리	제 1반	하갈래	【마을】	고한13리	제 1반
	"	제 2반	하갈래	【마을】	"	제 2반
	"	제 3반	범소(範小)마을	【마을】	"	제 3반
	"	제 4반	하갈래	【마을】	"	제 4반
	"	제 5반	하갈래	【마을】	"	제 5반
	"	제 6반	하갈래	【마을】	"	제 6반
	"	제 7반	하갈래	【마을】	"	제 7반
	"	제 8반	하갈래	【마을】	"	제 8반
	고한 14리	제 1반	고토일(古土日),웃마을, 큰고톨,골마을, 참배나무골,마당목이 마당목재,턱재,두일재, 갈래재,소두문동재	【마을】 【고개】	고한14리	제 1반
	"	제 2반	아랫말,지름터, 으달모태이 목지넘이	【마을】 【고개】	"	제 2반
	"	제 3반	작은고토일 스개이재 우암산	【마을】 【고개】 【산】	"	제 3반
	"	제 4반	고토일	【마을】	"	제 4반
	"	제 5반	고토일	【마을】	"	제 5반
	"	제 6반	고토일	【마을】	"	제 6반
	고한 15리	제 1반	진밭골,싸리덕	【마을】	고한15리	제 1반
	"	제 2반	부금소,신적,살갈매기, 삼봉골	【마을】	"	제 2반
	"	제 3반	못골,지곡(池谷), 모골아파트 철골	【마을】 【골짜기】	"	제 3반
	"	제 4반	적조암(寂照庵), 정암사(淨岩寺)	【사찰】	"	제 4반
	"	제 5반	적조암(寂照庵), 정암사(淨岩寺)	【사찰】	"	제 5반
	고한 16리	제 1반	강원랜드,사원아파트, 등마을	【마을】	고한16리	제 1반
	"	제 2반	강원랜드,사원아파트,	【마을】	"	제 2반
	"	제 3반	강원랜드,사원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강원랜드,사원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강원랜드,사원아파트,	【마을】	"	제 5반
	고한 17리	제 1반	구사택,양지마을. 하당목	【마을】	고한17리	제 1반
	"	제 2반	하갈래	【마을】	"	제 2반
	"	제 3반	하갈래	【마을】	"	제 3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고한읍	고한 17리	제 4반	하갈래	【마을】	고한17리	제 4반
	"	제 5반	하갈래	【마을】	"	제 5반
	"	제 6반	하갈래	【마을】	"	제 6반
	"	제 7반	하갈래	【마을】	"	제 7반
	고한 18리	제 1반	아랫시장	【마을】	고한18리	제 1반
	"	제 2반	아랫시장	【마을】	"	제 2반
	"	제 3반	아랫시장	【마을】	"	제 3반
	"	제 4반	아랫시장	【마을】	"	제 4반
	"	제 5반	아랫시장	【마을】	"	제 5반
	"	제 6반	아랫시장	【마을】	"	제 6반
	"	제 7반	아랫시장	【마을】	"	제 7반
	"	제 8반	아랫시장	【마을】	"	제 8반
	고한 19리	제 1반	웃시장	【마을】	고한19리	제 1반
	"	제 2반	웃시장	【마을】	"	제 2반
	"	제 3반	웃시장	【마을】	"	제 3반
	"	제 4반	웃시장	【마을】	"	제 4반
	"	제 5반	웃시장	【마을】	"	제 5반
	"	제 6반	웃시장	【마을】	"	제 6반
	"	제 7반	웃시장	【마을】	"	제 7반
	고한 20리	제 1반	고한아파트	【마을】	고한20리	제 1반
	"	제 2반	고한아파트	【마을】	"	제 2반
	″	제 3반	고한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해피아리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해피아리아파트	【마을】	″	제 5반
	"	제 6반	해피아리아파트	【마을】	"	제 6반
	"	제 7반	해피아리아파트	【마을】	"	제 7반
	"	제 8반	해피아리아파트	【마을】	"	제 8반
	"	제 9반	행복주택	【마을】	"	제 9반
	"	제 10반	행복주택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행복주택	【마을】	"	제 11반
	"	제 12반	행복주택	【마을】	"	제 12반
사북읍	직전리	제 1반	무냘	【마을】	직전리	제 1반
			불당골,감재골, 사양골	【골짜기】		
	"	제 2반	피내,탑뒤,주막거리, 사부랭이골	【마을】	"	제 2반
			서원기골	【골짜기】		
	″	제 3반	발전(鉢田),먼지골	【마을】	″	제 3반
			덧이마	【산】		
			빨딱고개	【고개】		
	″	제 4반	발전(鉢田),비릿,		″	제 4반
			노목산(櫓木山)	【마을】		
			고부산(高釜山)	【산】		
			마발이재,말고개재	【고개】		
			큰골	【골짜기】		
	사북 1리	제 1반	범바위골	【마을】	사북 1리	제 1반
	"	제 2반	범바위골	【마을】	"	제 2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사북읍	사북 1리	제 3반	범바위골	【마을】	"	제 3반	
		제 4반	범바위골	【마을】	"	제 4반	
		제 5반	범바위골	【마을】	사북 1리	제 5반	
		" 제 6반	범바위골	【마을】	"	제 6반 (대림아파트 가동)	
		" 제 7반	범바위골	【마을】	"	제 7반 (대림아파트 나동)	
		" 제 8반	범바위골 범바위	【마을】 【바위】	"	제 8반 (하이랜드빌라지 5동)	
		" 제 9반	범바위골	【마을】	"	제 9반	
		" 제 10반	범바위골	【마을】	"	제 10반 (영동아파트 3동~4동)	
		" 제 11반	범바위골	【마을】	"	제 11반	
	사북 2리	제 1반	사북아파트	【마을】	사북 2리	제 1반 (정선군임대아파트가동101호~505호)	
		" 제 2반	사북아파트	【마을】	"	제 2반 (정선군임대아파트나동101호~505호)	
		" 제 3반	사북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5반	
		" 제 6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6반	
		" 제 7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7반	
		" 제 8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8반	
		" 제 9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9반	
		" 제 10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11반	
		" 제 12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12반	
		" 제 13반	사북아파트	【마을】	"	제 13반	
		" 제 14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14반	
		" 제 15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15반	
		" 제 16반	사북아파트	【마을】	"	제 16반 (정선군임대아파트가동106호~510호)	
		" 제 17반	사북아파트	【마을】	"	제 17반 (정선군임대아파트나동106호~510호)	
	사북 3리	제 1반	아랫사북	【마을】	사북 3리	제 1반	
		" 제 2반	아랫사북	【마을】	"	제 2반	
		" 제 3반	아랫사북	【마을】	"	제 3반	
		" 제 4반	아랫사북	【마을】	"	제 4반	
		" 제 5반	아랫사북	【마을】	"	제 5반	
		" 제 6반	아랫사북	【마을】	"	제 6반	
		" 제 7반	아랫사북	【마을】	"	제 7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사북읍	사북 4리	제 1반	아랫사북	【마을】	사북 4리	제 1반
	"	제 2반	아랫사북	【마을】	"	제 2반
	"	제 3반	아랫사북	【마을】	"	제 3반
	"	제 4반	아랫사북	【마을】	"	제 4반
	"	제 5반	아랫사북	【마을】	"	제 5반
	사북 5리	제 1반	골말	【마을】	사북 5리	제 1반
	"	제 2반	골말	【마을】	"	제 2반
	"	제 3반	골말	【마을】	"	제 3반
	"	제 4반	골말	【마을】	"	제 4반
	"	제 5반	골말	【마을】	"	제 5반
	"	제 6반	골말	【마을】	"	제 6반
	"	제 7반	골말	【마을】	"	제 7반
	"	제 8반	골말	【마을】	"	제 8반
	"	제 9반	골말	【마을】	"	제 9반
	"	제 10반	골말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골말	【마을】	"	제 11반
	"	제 12반	골말	【마을】	"	제 12반
	"	제 13반	골말	【마을】	"	제 13반
	"	제 14반	골말	【마을】	"	제 14반
	"	제 15반	골말	【마을】	"	제 15반
	"	제 16반	골말	【마을】	"	제 16반
	"	제 17반	골말	【마을】	"	제 17반
	"	제 18반	골말	【마을】	"	제 18반
	사북 6리	제 1반	주공사북아파트	【마을】	사북 6리	제 1반
	"	제 2반	주공사북아파트	【마을】	"	제 2반
	"	제 3반	주공사북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주공사북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주공사북아파트	【마을】	"	제 5반
	"	제 6반	주공사북아파트	【마을】	"	제 6반
	"	제 7반	주공사북아파트	【마을】	"	제 7반
	"	제 8반	주공사북아파트	【마을】	"	제 8반
	"	제 9반	주공사북아파트	【마을】	"	제 9반
	"	제 10반	도사곡	【마을】	"	제 10반
	사북 7리	제 1반	소잡는골 말개이골	【골짜기】 【마을】	사북 7리	제 1반
	"	제 2반	윗사북	【마을】	"	제 2반
	"	제 3반	윗사북	【마을】	"	제 3반
	"	제 4반	윗사북	【마을】	"	제 4반
	"	제 5반	윗사북	【마을】	"	제 5반
	"	제 6반	윗사북	【마을】	"	제 6반
	사북 7리	제 7반	윗사북	【마을】	사북 7리	제 7반
	"	제 8반	윗사북	【마을】	"	제 8반
	"	제 9반	윗사북	【마을】	"	제 9반
	"	제 10반	윗사북	【마을】	"	제 10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사북읍	사북 8리	제 1반	시장	【마을】	사북 8리	제 1반
	"	제 2반	아랫사북	【마을】	"	제 2반
	"	제 3반	시장	【마을】	"	제 3반
	"	제 4반	아랫사북	【마을】	"	제 4반
	"	제 5반	역전 안경다리	【마을】 【마을】	"	제 5반
	"	제 6반	역전	【마을】	"	제 6반
	"	제 7반	역전	【마을】	"	제 7반
	"	제 8반	역전	【마을】	"	제 8반
	"	제 9반	시장	【마을】	"	제 9반
	"	제 10반	시장	【마을】	"	제 10반
	사북 9리	제 1반	아랫사북	【마을】	사북 9리	제 1반
	"	제 2반	아랫사북	【마을】	"	제 2반
	"	제 3반	선명오피스텔	【마을】	"	제 3반
	"	제 4반	선명오피스텔	【마을】	"	제 4반
	"	제 5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	제 5반
	"	제 6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	제 6반
	"	제 7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	제 7반
	"	제 8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	제 8반
	"	제 9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	제 9반
	"	제 10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	제 11반
	"	제 12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	제 12반
	사북 10리	제 1반	윗사북 마름터	【마을】 【마을】	사북10리	제 1반
	"	제 2반	윗사북	【마을】	"	제 2반
	"	제 3반	윗사북	【마을】	"	제 3반
	"	제 4반	윗사북	【마을】	"	제 4반
	"	제 5반	윗사북	【마을】	"	제 5반
	"	제 6반	윗사북	【마을】	"	제 6반
	"	제 7반	윗사북	【마을】	"	제 7반
	사북 11리	제 1반	단무지 남명이골	【마을】 【골짜기】	사북11리	제 1반
	"	제 2반	노른가리 둔둔재 천나무골,정지밭골, 안골안	【마을】 【고개】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북일,평지마을,공전 샛골,버무덕굴, 마당목이골,느르뱅이골 화적봉	【마을】 【골짜기】 【산】	"	제 3반
	사북 12리	제 1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사북12리	제1반(정선산수빌임대아파트101동201호~1503호)
	"	제 2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	제2반(정선산수빌임대아파트102동201호~1004호)
	"	제 3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	제3반(정선산수빌임대아파트103동101호~1403호)
	"	제 4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	제4반(정선산수빌임대아파트105동201호~902호)
	"	제 5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	제5반(정선산수빌임대아파트106동201호~1502호)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신동읍	예미 1리	제 1반	의림길,비석거리 창가산	【마을】 【산】		예미 1리	제 1반
	"	제 2반	의림길	【마을】		"	제 2반
	"	제 3반	의림길	【마을】		"	제 3반
	"	제 4반	의림길	【마을】		"	제 4반
	"	제 5반	의림길	【마을】		"	제 5반
	"	제 6반	의림길	【마을】		"	제 6반
	예미 2리	제 1반	유문동(柳門洞), 광판 신밭골 애목재	【마을】 【골짜기】 【고개】		예미 2리	제 1반
	"	제 2반	유문동 작은부밭골,큰부밭골, 큰뗏걸 수리봉	【마을】 【골짜기】 【산】		"	제 2반
	"	제 3반	유문동,괴그무골 달구매,큰구지, 용골 구러기재,고성라재 고성터널	【마을】 【골짜기】 【고개】 【터널】		"	제 3반
	예미 3리	제 1반	의림길	【마을】		예미 3리	제 1반
	"	제 2반	의림길,장터거리 공원산	【마을】 【산】		"	제 2반
	"	제 3반	의림길	【마을】		"	제 3반
	"	제 4반	의림길 장소(裝沼)	【마을】 【소】		"	제 4반
	"	제 5반	의림길	【마을】		"	제 5반
	"	제 6반	의림길	【마을】		"	제 6반
	예미 4리	제 1반	배영거리 새물보	【마을】 【보】	종전	예미 4리	제 1반
	"	제 2반	노일(魯日)	【마을】		"	제 2반
	"	제 3반	재건촌	【마을】		"	제 3반
	"	제 4반	노일	【마을】		"	제 4반
	"	제 5반	노일	【마을】		"	제 5반
	"	제 6반	노일	【마을】		"	제 6반
	"	제 7반(신설)	노일	【마을】	종전	"	제1반(여미솔아파트 101동)
	"	제 8반(신설)	노일	【마을】	종전	"	제1반(여미솔아파트 102동)
	예미 5리	제 1반	노일	【마을】		예미 5리	제 1반
	"	제 2반	노일	【마을】		"	제 2반
	"	제 3반	노일	【마을】		"	제 3반
	"	제 4반	노일	【마을】		"	제 4반
	"	제 5반	용주골 예미산(禮美山)	【마을】 【산】		"	제 5반
	예미 6리	제 1반	역전 예미역	【마을】 【역】		예미 6리	제 1반
	"	제 2반	역전	【마을】		"	제 2반
	"	제 3반	역전위	【마을】		"	제 3반
	"	제 4반	역전위	【마을】		"	제 4반
	"	제 5반	모란고지	【마을】		"	제 5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신동읍	예미 7리	제 1반	낟돌(納石),큰앞실 곁둥이골	【마을】 【골짜기】	예미 7리	제 1반
	"	제 2반	낟돌 염골,소골,범골	【마을】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의림길 건다이	【마을】 【전답】	"	제 3반
	천 포 리	제 1반	골마을,안골 앞재,텃재 물방아골	【마을】 【고개】 【골짜기】	천 포 리	제 1반
	"	제 2반	용가들	【마을】	"	제 2반
	"	제 3반	곡기리[曲吉] 고은골 오리터	【마을】 【골짜기】 【고개】	"	제 3반
	"	제 4반	원천포(元泉浦),양지마을, 용가,서들굼이 밤재 주막거리,잠대거리 지실골 온셤지기,박죽등	【마을】 【둔덕】 【거리】 【골짜기】 【산】	"	제 4반
	"	제 5반	원천포(元泉浦) 곧은골	【마을】 【골짜기】	"	제 5반
	조동 1리	제 1반	길운(吉雲)	【마을】	조동 1리	제 1반
	"	제 2반	길운(吉雲),덕말	【마을】	"	제 2반
	"	제 3반	길운 철골	【마을】 【골짜기】	"	제 3반
	조동 2리	제 1반	길운	【마을】	조동 2리	제 1반
	"	제 2반	골안	【마을】	"	제 2반
	"	제 3반	골안	【마을】	"	제 3반
	"	제 4반	안길운 염묘산[連墓山]	【마을】 【산】	"	제 4반
	"	제 5반	안길운 개비덕 뱃재	【마을】 【언덕】 【고개】	"	제 5반
	조동 3리	제 1반	개미촌 간이역	【마을】 【역】	조동 3리	제 1반
	"	제 2반	구룡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구룡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구룡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구룡동	【마을】	"	제 5반
	"	제 6반	구룡동	【마을】	"	제 6반
	"	제 7반	구룡동	【마을】	"	제 7반
	조동 4리	제 1반	시장 수리봉	【마을】 【산】	조동 4리	제 1반
	"	제 2반	시장	【마을】	"	제 2반
	"	제 3반	시장	【마을】	"	제 3반
	"	제 4반	시장	【마을】	"	제 4반
	"	제 5반	시장	【마을】	"	제 5반
	"	제 6반	시장	【마을】	"	제 6반
	조동 5리	제 1반	시장 새목이	【마을】 【고개】	조동 5리	제 1반
	"	제 2반	시장	【마을】	"	제 2반
	"	제 3반	유신촌(維新村)	【마을】	"	제 3반
	"	제 4반	중앙(中央) 상여골	【마을】 【골짜기】	"	제 4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신동읍	조동 6리	제 1반	새골,계장사택 새매골,살개골, 다래골 개간지	【마을】 【골짜기】 【전답】	조동 6리	제 1반
	"	제 2반	새골	【마을】	"	제 2반
	"	제 3반	새골주공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새골주공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재피골	【마을】	"	제 5반
	"	제 6반	재피골	【마을】	"	제 6반
	"	제 7반	벌밭,별말,과장사택 애매골,부대골	【마을】 【골짜기】	"	제 7반
	"	제 8반	밝은밭 밝은밭골	【마을】 【골짜기】	"	제 8반
	조동 7리	제 1반	용화동	【마을】	조동 7리	제 1반
	"	제 2반	용화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용화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용화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용화동	【마을】	"	제 5반
	"	제 6반	모닥불		"	제 6반
	"	제 7반	모닥불,점촌,응달마을, 양지마을 대전길	 【마을】 【고개】	"	제 7반
	조동 8리	제 1반	안경다리	【마을】	조동 8리	제 1반
	"	제 2반	안경다리	【마을】	"	제 2반
	"	제 3반	안경다리	【마을】	"	제 3반
	"	제 4반	안경다리 방아소	【마을】 【소】	"	제 4반
	"	제 5반	안경다리	【마을】	"	제 5반
	조동 9리	제 1반	길운(吉雲)	【마을】	조동 9리	제 1반
	"	제 2반	길운(吉雲)	【마을】	"	제 2반
	"	제 3반	길운(吉雲)	【마을】	"	제 3반
	"	제 4반	길운(吉雲) 사스레골 방충메기	【마을】 【골짜기】 【도로】	"	제 4반
	방제 1리	제 1반	장재터 다래산	【마을】 【산】	방제 1리	제 1반
	"	제 2반	미륵	【마을】	"	제 2반
	"	제 3반	역전(驛前),웃덕감배기 미륵골 함백역(咸白驛) 덕쇠	【마을】 【골짜기】 【역】 【전답】	"	제 3반
	"	제 4반	아랫방제,둔박골	【마을】	"	제 4반
	"	제 5반	웃방제,매화동(梅花洞) 만평짜리 수리재,새덕재 고무골	【마을】 【전답】 【고개】 【골짜기】	"	제 5반
	"	제 6반	웃방제,매화동(梅花洞)	【마을】	"	제 6반
	방제 2리	제 1반	새빗재 설령 아터 단곡(檀谷),마곡	【고개】 【마을】 【골짜기】	방제 2리	제 1반
	"	제 2반	새빗재	【마을】	"	제 2반
	"	제 3반	새빗재	【마을】	"	제 3반
	"	제 4반	독가촌 질운산	【마을】 【산】	"	제 4반
	"	제 5반	독가촌 질운산	【마을】 【산】	"	제 5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신동읍	가 사 리	제 1반	원가사(元佳士)	【마을】	가 사 리	제 1반
	"	제 2반	원가사(元佳士) 고재골,막골	【마을】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두리골,남애(南崖)	【마을】	"	제 3반
	"	제 4반	머드레이,피실 황정골	【마을】 【골짜기】	"	제 4반
	"	제 5반	마차(磨差) 마산등,곰봉[熊峰] 동점골	【마을】 【산】 【골짜기】	"	제 5반
	고성 1리	제 1반	벌말[坪丘],고림(古林) 훅실골,큰골,작은골, 터덕골 고고산(高古山) 미구재[美九峙]	【마을】 【골짜기】 【산】 【고개】	고성 1리	제 1반
	"	제 2반	고림(古林)	【마을】	"	제 2반
	"	제 3반	벌말[坪丘]	【마을】	"	제 3반
	"	제 4반	수촌(水村),큰골	【골짜기】	"	제 4반
	고성 2리	제 1반	새나루[新津] 덧재	【마을】 【고개】	고성 2리	제 1반
	"	제 2반	창마을[內倉],뒤실 요골 덕새 뒷덕 욧대봉	【마을】 【골짜기】 【둔덕】 【저댑】 【산】	"	제 2반
	"	제 3반	자르메[柄山]	【마을】	"	제 3반
	"	제 4반	고방(古芳) 큰머골 성재[城峙],나리재, 당목이재	【마을】 【골짜기】 【고개】	"	제 4반
	덕 천 리	제 1반	덕내 뒤실	【마을】 【골짜기】	덕 천 리	제 1반
	"	제 2반	덕내 무랑골재,물레재,큰재	【마을】 【고개】	"	제 2반
	"	제 3반	골덕내,제장(堤場), 소골[所洞] 소로나루 산개굴,돌채골 칠족령(七足嶺) 배비랑산 나리소,바리소,하방소	【마을】 【나루】 【골짜기】 【고개】 【산】 【소】	"	제 3반
	"	제 4반	바새	【마을】	"	제 4반
	"	제 5반	연포(硯浦) 칼봉	【마을】 【산】	"	제 5반
	"	제 6반	거부기[龜浦]	【마을】	"	제 6반
	운치 1리	제 1반	돈니치(敦泥峙)	【마을】	운치 1리	제 1반
	"	제 2반	돈니치(敦泥峙) 샘골	【마을】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돈니치(敦泥峙)	【마을】	"	제 3반
	"	제 4반	돈니치(敦泥峙) 은골[銀谷]	【마을】 【골짜기】	"	제 4반
	"	제 5반	기일(基日) 말구리재, 남애재[南崖峙]	【마을】 【고개】	"	제 5반
	"	제 6반	터골[基谷] 문밭재,새재	【골짜기】 【고개】	"	제 6반
	운치 2리	제 1반	점치 점치나루터 병목 백운산(白雲山)	【마을】 【나루터】 【고개】 【산】	운치 2리	제 1반
	"	제 2반	번들,평창마을	【마을】	"	제 2반
			독지	【분지】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신동읍	"	제 3반	수동(水洞) 수갈령재,구름재 범에굴 용첨지 밭골 수동나루 용바우	【마을】 【고개】 【동굴】 【골짜기】 【나루터】 【바위】	"	제 3반	
	운치 3리	제 1반	납운돌(納雲乭),갈벌	【마을】	운치 3리	제 1반	
	"	제 2반	대말[大村] 탑서낭당이 얼음굴	【마을】 【성황당】 【동굴】	"	제 2반	
	"	제 3반	설론(雪論),고말,독지골 노루메	【마을】 【고개】	"	제 3반	
화암면	화암 1리	제 1반	아래그림바위[下畵岩]	【마을】	화암 1리	제 1반	
	"	제 2반	아래그림바위[下畵岩]	【마을】	"	제 2반	
	"	제 3반	아래그림바위[下畵岩]	【마을】	"	제 3반	
	"	제 4반	아래그림바위[下畵岩]	【마을】	"	제 4반	
	화암 1리	제 5반	위그림바위[上畵岩], 아래그림바위[下畵岩] 거북바위[龜岩],화표주	 【마을】 【바위】	화암 1리	제 5반	
	"	제 6반	구슬동(九瑟洞),원터[院基], 작은구슬동,텃개 약수골,샘골 화암약수(畵岩藥水), 쌍약수 뒷골	 【마을】 【골짜기】 【약수】 【고개】	"	제 6반	
	"	제 7반	큰구슬동 금지기골,풀미당골,송산골, 도장골 미사리재 천파랭이굴	【마을】 【골짜기】 【고개】 【동굴】	"	제 7반	
	화암 2리	제 1반	천포(泉浦),솔무데기, 새골들 화암동굴 큰골 쌍봉	 【마을】 【동굴】 【골짜기】 【산】	화암 2리	제 1반	
	"	제 2반	싸내[米川] 싸내들	【마을】 【전답】	"	제 2반	
	"	제 3반	윗둔지 느즌목골,신밭골,점불 살구재,군의산 용마소(龍馬沼)	【마을】 【골짜기】 【산】 【소】	"	제 3반	
	화암 3리	제 1반	양지좌사 팍심이재 산제골,너래골,큰터골 좌사뜰	【마을】 【고개】 【골짜기】 【전답】	화암 3리	제 1반	
	"	제 2반	음지좌사 좌사들 묻방안 동가산 모개이소 소리개재[鳶峙]	【마을】 【전답】 【바위】 【산】 【소】 【고개】	"	제 2반	
	"	제 3반	오산(鰲山) 봉우산 늠풍들,굴개들 오무재,문재[門峙]	【마을】 【산】 【전답】 【고개】	"	제 3반	
	화암 4리	제 1반	화표동 옥녀골,산지동골, 되기골	【마을】 【골짜기】	화암 4리	제 1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화암면	화암 4리	제 2반	큰터[大基],후원(後園), 노갈리 【마을】 절골,새덕골,승지골, 장골,재골 【골짜기】	"	제 2반
	화암 4리	제 3반	활개이 【마을】 활개골,매천황골,고충골, 말미골 【골짜기】 비슬이재 【고개】	"	제 3반
	석곡 1리	제 1반	억실(億實) 【마을】 수리들 【전답】 누에머리 【산】 가래골,뒤뜰 【골짜기】 퇴재,말목재 【고개】	석곡 1리	제 1반
	"	제 2반	덕거리(德巨里),소리개, 도른들 【마을】 궁포,불땡기양지 【전답】 소리개재[鳶峙] 【고개】 앞재,궁가산 【산】 두신개골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수리골[水流洞],방평(芳坪), 애리,마덕(馬德),방두둑골 【마을】 가래미골,큰두리골, 보리산골,화골 【골짜기】 수리들 【전답】	"	제 3반
	석곡 2리	제 1반	돌목,하돌목,후면(後面), 양지편 【마을】 석문(石門) 【고개】 동무 【산】 장광들 【전답】 배지름골 【골짜기】	석곡 2리	제 1반
	"	제 2반	돌목 【마을】 성진산(聖眞山) 【산】 보리산골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상돌목[上石項],골안, 빈지내 【마을】	"	제 3반
	"	제 4반	상돌목[上石項],장승백이, 거미대(巨美臺) 【마을】 마산재,동산 【산】	"	제 4반
	북 동 리	제 1반	문치재,다래재골 【고개】 문치골,물방골,다래골[月愛谷] 큰소래골,작은소래골, 수리병골 【골짜기】 무냘,뒷골길,뒷골 【마을】 상신날 【산】	북 동 리	제 1반
	"	제 2반	상북동(上北洞),제자거리, 막거리,이매기 【마을】 양지누르골,숯가마골, 이매기골,도투마리골 【골짜기】 이무소산 【산】	"	제 2반
	"	제 3반	중북동,하북동(下北洞) 【마을】 윗메골,배나무골 【골짜기】 박심재,도골 【고개】 동무등 【산】	"	제 3반
	"	제 4반	함바위 【바위】 돌골[石谷],큰터 【마을】 재미골,쇠골,신들골, 곰보기골,서낭뒤골,앞모랭이골, 도롱골,노나무골 【골짜기】 용소 【소】 곰목이재 【고개】 옷물내기 【약수】	"	제 4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몰운 1리	제 1반	한치(汗峙)	【마을】	몰운 1리	제 1반
			직골	【골짜기】		
			가산갱(佳山坑)	【동굴】		
	"	제 2반	양지마을	【마을】	"	제 2반
			큰승지골,뒈기골,들미골	【골짜기】		
			소금강,지령곡(地靈谷),			
			소둔지	【산】		
			지레이굽,설암개구장	【하천】		
			설암(雪岩)	【바위】		
	몰운 1리	제 3반	음지마을	【마을】	"	제 3반
			샛둔지	【전답】		
			들미골	【골짜기】		
			창재	【고개】		
	몰운 2리	제 1반	광대곡(廣大谷)	【마을】	몰운 2리	제 1반
			광대산(廣大山)	【산】		
			수국개,활대고데이	【골짜기】		
	"	제 2반	버들골[柳谷]	【마을】	"	제 2반
			삿갓봉	【산】		
			덧재	【고개】		
	"	제 3반	몰운,아랫제동,각희골	【마을】	"	제 3반
			몰운대(沒雲臺),뒷재봉우리,			
			앞산봉우리	【산】		
			산탈골	【골짜기】		
	"	제 4반	제동[猪洞],웃제동	【마을】	"	제 4반
			큰제동골,개골	【골짜기】		
			지억산,동뫼산,늪잔등	【산】		
			각희재길,글안재	【고개】		
			큰소구녕	【동굴】		
	건 천 리	제 1반	본동,웃마을	【마을】	건 천 리	제 1반
			덧재,새금,송이재,			
			바람부리	【고개】		
			홍대골,잠대골,노장골,			
			용수골,손이골,통로골	【골짜기】		
			배골재	【산】		
	"	제 2반	큰벌[大坪],		"	제 2반
			장아리(奘阿里)	【마을】		
			후언이	【고개】		
	"	제 3반	소일	【마을】	"	제 3반
			메골,참나무골,			
			버무덕골,늑골	【골짜기】		
			덕심이재	【고개】		
	호 촌 리	제 1반	양지모태이,갈번지,		호 촌 리	제 1반
			석둘,어우슬(於牛膝)	【마을】		
			앞뼝,뒷재	【산】		
			수억딩이	【전답】		
			자개골,어우실골	【골짜기】		
			봉이재	【고개】		
	"	제 2반	마산	【산】	"	제 2반
			지르메	【고개】		
			구영소	【소】		
화암면	호 촌 리	제 3반	풍촌(豊村)	【마을】	호 촌 리	제 3반
			삼봉,관청재	【산】		
			버섯골,항골,샛골,			
			쇠작것	【골짜기】		
			상나무재	【고개】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화암면	호 촌 리	제 4반	호명(虎鳴),양지마을, 음지마을 【마을】 두리봉,장재[獐峙], 감재[甘峙] 【산】 뫼굼,학교터밭들, 말구리밭들 【전답】 샘이골,쥐담밭골, 옥운이골[玉雲洞] 【골짜기】 동목재 【고개】	"	제 4반
	백전 1리	제 1반	정승골,승상곡(丞相谷), 바깥정승골,무개골, 무릉가웃골,서원기(書院基), 갈번지골,불당재골,피내재골, 골막골,옛터골, 골롯골, 옥슬매기골 【골짜기】 선돌,탕건바우 【바위】 피대봉,쌍봉 【산】 물건네 【마을】 새둔지,늪안 【전답】 둥둥재 【고개】	백전 1리	제 1반
화암면	백전 1리	제 2반	평밭거리,합수거리,합수동 【마을】 갬골 【골짜기】 삿갓봉 【산】	"	제 2반
	"	제 3반	백전 【마을】 목넘에 【고개】 머구릉골,늪등골,앞새골 【골짜기】 학교뒷산 【산】 늪등 【전답】	"	제 3반
	"	제 4반	백전 【마을】	"	제 4반
	백전 2리	제 1반	마당목[場項] 【마을】 장수바위골,느서목골, 담부터골,재피골,고수밭골, 솔사밭굼골 【골짜기】 큰굼,배나무굼 【전답】 공전재,느르목 【고개】	백전 2리	제 1반
	"	제 2반	한소리,용소마을 【마을】 아랫고사밭골,윗고사밭골, 작은하니소골,숭기재골, 웃밭골,머박골,상개박골, 덕골,다래골,베개터골, 가래밭골 【골짜기】 용소(龍沼) 【동굴】 용소분교 【학교】 백전리물레방아 【물레방아】 천제봉 【산】	"	제 2반
	"	제 3반	노나무 【마을】 노나무재 【고개】 다래골,무덤실골,피냇골, 큰재밑골,뒷골 【골짜기】 돌바우양지 【산】	"	제 3반
	"	제 4반	노나무 【마을】	"	제 4반
남 면	문곡 1리	제 1반	별어곡(別於谷) 【마을】 지장천(地藏川) 【하천】	문곡 1리	제 1반
	"	제 2반	별어곡(別於谷) 【마을】 팔봉산 【산】	"	제 2반
	"	제 3반	별어곡(別於谷) 【마을】 별어곡역 【역】 자라바우 【바위】	"	제 3반
	"	제 4반	별어곡(別於谷) 【마을】	"	제 4반
	"	제 5반	별어곡(別於谷) 【마을】	"	제 5반
	"	제 6반	별어곡(別於谷),음지촌(陰地村), 갈버둥이 【마을】 무은담(霧隱潭) 【소】 절골 【골짜기】	"	제 6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남면	문곡 1리	제 7반	별어곡(別於谷)	【마을】	"	제 7반
	"	제 8반	자미원입구	【마을】	"	제 8반
	"	제 9반	수려안아파트	【마을】	"	제 9반
	"	제 10반	수려안아파트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수려안아파트, 별어곡(別於谷)	【마을】	"	제 11반
	문곡 2리	제 1반	고무골,큰서덕,점말[店村] 어르메기,함박골,흠재이지골, 솔구랭이,큰당골,산제골, 상사골,빈지골, 난치나무골 줄솔배기,북동산 문둥바우 샘물내기 벌밭	【마을】 【골짜기】 【산】 【바위】 【샘】 【전답】	문곡 2리	제 1반
	문곡 2리	제 2반	골말 가재골,목재이골,둔지골 목쟁이 가개산 덕새	【마을】 【골짜기】 【고개】 【산】 【전답】	"	제 2반
	"	제 3반	구등,바깥구등,안구등, 탑거리통노구골 절골,구수골,옛터골,절골, 샘골,큰통노구골,재피골, 울둔이골 마당맥이 마차재	【마을】 【골짜기】 【전답】 【고개】	"	제 3반
	문곡 3리	제 1반	자미원(紫味院),오지구 약물내기 약물골,운골,물구지골 두리봉	【마을】 【샘】 【골짜기】 【산】	문곡 3리	제 1반
	"	제 2반	삼지구 어둔이골	【마을】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은빛마을,웃말,서낭밑,솔안 자미원역 수리재 수리재터널 수리재골,가장골,뒷골, 부채골,팔항골,절골	【마을】 【역】 【산】 【터널】 【골짜기】	"	제 3반
	"	제 4반	아랫마을,중간마을, 갈강지버덩 새물내기 덕새 큰마당골,승지미 새재	 【마을】 【샘】 【전답】 【골짜기】 【고개】	"	제 4반
	무릉 1리	제 1반	멀미주공아파트	【마을】	무릉 1리	제 1반
	"	제 2반	멀미주공아파트	【마을】	"	제 2반
	"	제 3반	멀미주공아파트	【마을】	"	제 3반
	문곡 2리	제 2반	골말 가재골,목재이골,둔지골 목쟁이 가개산 덕새	【마을】 【골짜기】 【고개】 【산】 【전답】	"	제 2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남면	"	제 3반	구등,바깥구등,안구등, 탑거리통,노구골 절골,구수골,옛터골,절골, 샘골,큰통노구골,재피골, 울둔이골 마당맥이 마차재	【마을】 【골짜기】 【전답】 【고개】	"	제 3반	
	문곡 3리	제 1반	자미원(紫味院),오지구 약물내기 약물골,운골,물구지골 두리봉	【마을】 【샘】 【골짜기】 【산】	문곡 3리	제 1반	
	"	제 2반	삼지구 어둔이골	【마을】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은빛마을,웃말,서낭밑, 솔안 자미원역 수리재 수리재터널 수리재골,가장골,뒷골, 부채골,팔항골,절골	 【마을】 【역】 【산】 【터널】 【골짜기】	"	제 3반	
	"	제 4반	아랫마을,중간마을, 갈강지버덩 새물내기 덕새 큰마당골,승지미 새재	 【마을】 【샘】 【전답】 【골짜기】 【고개】	"	제 4반	
	무릉 1리	제 1반	멀미,멀미주공아파트	【마을】	무릉 1리	제 1반	
	"	제 2반	멀미주공아파트	【마을】	"	제 2반	
	"	제 3반	멀미주공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멀미주공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멀미주공아파트	【마을】	"	제 5반	
	"	제 6반	멀미주공아파트	【마을】	"	제 6반	
	"	제 7반	멀미주공아파트	【마을】	"	제 7반	
	"	제 8반	웃궁터,아랫궁터,뒷양지 큰골,물개골,바른골, 높은가마,돼지덫굼, 참선이골	【전답】 【골짜기】	"	제 8반	
	무릉 2리	제 1반	잿말,자고치,억새마을, 외자고치,안자고치 시루봉 뒷골개구장 뒷개울골,피아골, 안자고치골 마발이재	 【마을】 【산】 【하천】 【골짜기】 【고개】	무릉 2리	제 1반	
	"	제 2반	덕만(德巒),싸리실(砂理室), 돌티미 뒷골,덕골,피내재골, 싸리재골,금동메골, 직구랑골,뒷싸리실골 피내재	 【마을】 【골짜기】 【고개】	"	제 2반	
	"	제 3반	능전(能田) 능전골,문안골,건는골, 발구덕골 가산	【마을】 【골짜기】 【산】	무릉 2리	제 3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남면	무릉 2리	제 4반	쇠골,금곡(金谷),은골, 발구덕(發九德) 발구덕샘 절골,산자골,바랭이골,잔골, 각희재골,찰골 지억산(芝億山),삿갓봉, 민둥산,촛대봉 각희재 각희재길	【마을】 【샘】 【골짜기】 【산】 【고개】 【도로】		"	제 4반
	무릉 3리	제 1반	증산,탑거리	【마을】	무릉 3리		제 1반
	"	제 2반	자뭇골,탑거리 너래골	【마을】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자뭇골	【마을】	종전	"	제 3반, 제 4반(그린빌라 구역)
	"	제 4반	자뭇골	【마을】	종전	"	제 4반
	"	제 5반	자뭇골 밤나무골,된벌구,새재골, 절골,큰마당골 도토마등	【마을】 【골짜기】 【산】		"	제 5반
	무릉 4리	제 1반	증산(甑山)	【마을】	무릉 4리		제 1반
	"	제 2반	증산(甑山)	【마을】		"	제 2반
	"	제 3반	증산(甑山)	【마을】		"	제 3반
	"	제 4반	증산(甑山)	【마을】		"	제 4반
	"	제 5반	증산(甑山) 민둥산역 행교골 늪등	【마을】 【역】 【골짜기】 【산】		"	제 5반
	"	제 6반	증산(甑山)	【마을】		"	제 6반
	"	제 7반	증산(甑山)	【마을】		"	제 7반
	"	제 8반	증산(甑山)	【마을】		"	제 8반
	"	제 9반	증산(甑山)	【마을】		"	제 9반
	"	제 10반	증산(甑山)	【마을】		"	제 10반
	무릉 5리	제 1반	정지간,묵산(墨山)	【마을】	무릉 5리		제 1반
	"	제 2반	정지간	【마을】		"	제 2반
	"	제 3반	묵산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묵산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묵산아파트	【마을】		"	제 5반
	"	제 6반	묵산아파트	【마을】		"	제 6반
	"	제 7반	묵산아파트	【마을】		"	제 7반
	"	제 8반	묵산아파트	【마을】		"	제 8반
	"	제 9반	묵산아파트	【마을】		"	제 9반
	유평 1리	제 1반	잿마을,메기돌,소마평(小馬坪), 방아실 큰골,피패골 버덩동뫼산,돌서덕덧	【마을】 【골짜기】 【산】	유평 1리		제 1반
	"	제 2반	양짓마을,거리말 한치재	【마을】 【산】		"	제 2반
	"	제 3반	소마평(小馬坪), 아살미[我山米] 큰방아골,서낭골, 고병계곡(高屛溪谷) 장재,매봉재,갈거리산 오파천(鰲波川) 석혈(石穴)	【마을】 【골짜기】 【산】 【하천】 【동굴】		"	제 3반
	"	제 4반	새마을[新村],곧은모태이, 중간모태이 말병바우 아살미골,재기실골	【마을】 【바위】 【골짜기】		"	제 4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남면	"	제 5반	새마을[新村],아랫모태이	【마을】	"	제 5반
			자차골,큰넘바우골,제[당골,			
			작은넘바우골,아랫골,			
			가는골,뫼골,절터산성골	【골짜기】		
			들이산성	【바위】		
	유평 2리	제 1반	한치[汗峙],오름실	【마을】	유평 2리	제 1반
			동막골,한치골	【골짜기】		
			말등바우산,팟대봉	【산】		
	"	제 2반	버드내[柳川],곰말	【마을】	"	제 2반
			쥐골	【골짜기】		
			미사리재	【고개】		
			천파랭이굴	【동굴】		
	"	제 3반	삼내,동기촌,고일(古日),		"	제 3반
			안골	【마을】		
			새양골	【샘】		
			고두	【고개】		
			삼내약수	【약수】		
			살바우골,새안골,			
			뒷구레이	【골짜기】		
	낙동 1리	제 1반	거칠현동(居七賢洞),건개	【마을】	낙동 1리	제 1반
			큰고개,거칠현재	【고개】		
			초당병	【절벽】		
			산성,상상봉,서운산(瑞雲山)	【산】		
			갓산성골,벼락바우골,너래골,			
			보리산골	【골짜기】		
	"	제 2반	남창(南倉),수발	【마을】	"	제 2반
			어룡골,도장골,보리산골,			
			쟁배이골,고무덕골,절골	【골짜기】		
			보리산	【산】		
	"	제 3반	선평(仙坪),양짓마을	【마을】	"	제 3반
			뒷가산,지르메봉	【산】		
			낙풍천(樂豊川)	【하천】		
			공동들	【전답】		
			노룡골	【골짜기】		
			쇄재[지르메재],소재	【고개】		
	낙동 2리	제 1반	갬들[蟻坪]	【마을】	낙동 2리	제 1반
	"	제 2반	음지마을,양짓말	【마을】	"	제 2반
			산자골	【골짜기】		
	"	제 3반	웃말,맷둔(梅屯),북천	【마을】	"	제 3반
			진고개재	【골짜기】		
			뒷덕	【전답】		
	"	제 4반	뒷내[後川],덧넘에,뒷내골,		"	제 4반
			탑거리	【마을】		
			천마산[天馬山],능무덤	【산】		
			솔개재,문두치,단방귀재	【고개】		
			문두골	【골짜기】		
	낙동 3리	제 1반	음달말	【마을】	낙동 3리	제 1반
			백이산[伯夷山],소재	【산】		
			감투바우	【바위】		
			이구만묵밭	【전답】		
			어두궁이골	【골짜기】		
	"	제 2반	음달말	【마을】	"	제 2반
			선평역	【역】		
			새발이	【전답】		
			새발골	【골짜기】		
	"	제 3반	음달말	【마을】	"	제 3반
			속섬	【전답】		
	"	제 4반	음달말	【마을】	"	제 4반
			샘들고개	【고개】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남면	낙동 3리	제 5반	샘들[泉坪],선들,구정뱅이 못들밭 치개병,각둔이 증골,당골 광대비리	【마을】 【전답】 【산】 【골짜기】 【바위】	"	제 5반
	광덕 1리	제 1반	수령(首嶺),초두평(草頭坪), 기와집터 둥지봉,수리봉,달구봉[鷄峰] 머리재,터골재,수령목,배고개 사모바우 새매기골,메골【골짜기】	【마을】 【산】 【고개】 【바위】	광덕 1리	제 1반
	"	제 2반	영골,영곡(靈谷),은향골 터골,너비개구장골,막바우골, 작은능골,큰능골,울둔이골 터골재,머리재	【마을】 【골짜기】 【고개】	"	제 2반
	"	제 3반	채운(菜雲),돌티미[石帶], 방아실,수아우[禾岩] 채운골,뒷골,웃둔이골,무개골, 자치골,바실골,벼락바우골, 고리골,방아실재,생골,재골, 산지댕이골 옥녀봉,뾰족봉,벽암산(霹巖山) 신당고개 강선대 장재터 칠선탕	【마을】 【골짜기】 【산】 【고개】 【바위】 【전답】 【바위】	"	제 3반
	"	제 4반	너배이,광방(廣坊) 범골,새골,애기골,산제골 꼬부랑재,트리재,문밭재, 영곡재 곰봉[熊峰]	【마을】 【골짜기】 【고개】 【산】	"	제 4반
	광덕 2리	제 1반	송오리(松梧里) 우묵골 덕내산	【마을】 【골짜기】 【산】	광덕 2리	제 1반
	"	제 2반	광탄(廣灘),미리내 승전말등 통골목골,안골	【마을】 【산】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양지말 귀나무쟁이 증골개굴 보수병 마등산 송고개 성고개	【마을】 【마을】 【골짜기】 【산】 【산】 【고개】 【고개】	"	제 3반
	"	제 4반	서마루[三宗],바깥서마루, 안서마루,서지(徐旨),갈금(葛金), 덕산동,재름께,역밭[驛田] 증골,쇠골,올창골,무랑골, 신밭골 감투봉,매봉산 마치둔재,구슬목이,너튼이재, 굴그리재 용바우[龍岩]	【마을】 【골짜기】 【산】 【고개】 【바위】	"	제 4반
여량면	여량 1리	제 1반	여량(餘糧),여량촌(餘粮)	【마을】	여량 1리	제 1반
	"	제 2반	여량	【마을】	"	제 2반
	"	제 3반	여량	【마을】	"	제 3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여량면	여량 1리	제 4반	여량,녹고마니,문아구 새두둑 제당골[祭壇谷],절골,산지댕이,무심골,사실골,너르메골 붉은뼝대 발달고데이 큰명지목이,살개봉,틸구렁이,광산봉,반륜산(半輪山), 잘룩봉 고양천	【마을】 【전답】 【골짜기】 【바위】 【고개】 【산】 【하천】	"	제 4반
	"	제 5반	여량	【마을】	"	제 5반
	여량 2리	제 1반	상동	【마을】	여량 2리	제 1반
	"	제 2반	상동,장거리	【마을】	"	제 2반
	"	제 3반	상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상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상동,아우라지들 아우라지	【마을】	"	제 5반
	여량 3리	제 1반	하동	【마을】	여량 3리	제 1반
	"	제 2반	여량	【마을】	"	제 2반
	"	제 3반	여량 덕구미	【마을】 【전답】	"	제 3반
	"	제 4반	마산재마을,벌안 마산재,용전 꽃베루 녹고개 선두골,배골	【마을】 【산】 【도로】 【고개】 【골짜기】	"	제 4반
	여량 4리	제 1반	상동	【마을】	여량 4리	제 1반
	"	제 2반	상동 염장봉(鹽臟峰) 다랫벌	【마을】 【산】 【전답】	여량 4리	제 2반
	"	제 3반	상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상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상동,비석거리 상동나루,뱃나들이	【마을】 【나루】	"	제 5반
	"	제 6반	곰바리 배비리 복구골,북호골,큰잿밭골, 소낭뒷골,작은잿밭골,새고라지골, 큰쇠고라지,작은쇠고라지, 절골 수리봉,뒷번지기 곰바리굴	【마을】 【바위】 【골짜기】 【산】 【골동굴】	"	제 6반
	"	제 7반	곰바리	【마을】	"	제 7반
	"	제 8반	곰바리	【마을】	"	제 8반
	여량 5리	제 1반	가금(加金),당너머 옥갑산(玉甲山) 절골[寺谷],고음동(古音洞), 골금,골금골 당고개 상투베리	【마을】 【산】 【골짜기】 【고개】 【바위】	여량 5리	제 1반
	"	제 2반	윗마을 썰매들	【마을】 【고개】	"	제 2반
	"	제 3반	윗마을	【마을】	"	제 3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여량면	유천 1리	제 1반	송천(松川),송정 절골,가은골,여우골 복개등,상산터,달뜨기 독재 송정길 여송정(餘松亭)	【마을】 【골짜기】 【산】 【고개】 【도로】 【정자】	유천 1리	제 1반	
		" 제 2반	그물목이 가마소 코클베리	【산】 【소】 【바위】		" 제 2반	
		" 제 3반	개금벌 범바우골,범바우구렁 공동산 숫금소	【전답】 【골짜기】 【산】 【소】		" 제 3반	
		" 제 4반	싸리골,뒷버덩 궁대,푯대봉,내피골속등 속골,작은속골,내피골, 서짝골	【마을】 【산】 【골짜기】		" 제 4반	
	유천 2리	제 1반	윗지경,늠바위 막두골,아랫북바위골, 윗북바위골,재피골,되골 붉은병애,굴아우	【마을】 【골짜기】 【바위】	유천 2리	제 1반	
		" 제 2반	유문재 지경(地境),장자터 뒷벌 왕재골,시장개골	【고개】 【마을】 【전답】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달뜬골,월부동(月浮洞), 자분골[磁墳谷],배지기, 양지마을,장자터 왕재산 자개골,달뜬골,질매재골, 호랑골	【마을】 【산】 【골짜기】		" 제 3반	
	유천 3리	제 1반	흥터 황새바우 두릉소 해산나들이들	【마을】 【바위】 【소】 【전답】	유천 3리	제 1반	
		" 제 2반	양지말,맛두둑,마평(馬坪) 달개치,가물재 달개골,고무골,약물골 맛두둑길	【마을】 【고개】 【골짜기】 【도로】		" 제 2반	
		" 제 3반	갓거리,관괘동(冠掛洞) 맛두둑골 툇물소	【마을】 【골짜기】 【소】		" 제 3반	
		" 제 4반	자개골[自開谷],자개앗 통골,지당골,작은가지내미, 큰가지내미,여내골,표골 흘망재,마당목이 상원산(上元山),육백마지기, 숫돌봉,숫돌배기	【마을】 【골짜기】 【고개】 【산】		" 제 4반	
	구절 1리	제 1반	삼거리	【마을】	구절 1리	제 1반	
		" 제 2반	삼거리,본동,하구절,덕갈밭 다락산(多樂山) 협신골	【마을】 【산】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본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본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본동	【마을】		" 제 5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	제 6반	본동	【마을】	"	제 6반
			구절역			
	"	제 7반	본동	【마을】	"	제 7반
	"	제 8반	자개(自開),자개앗,장두덕이,		"	제 8반
			장두데기,아랫자개,가래둔지,			
			상자개,불당골,지칠데기,			
			거문골,금동(琴洞)	【마을】		
			장수골,밤나무골,			
			작은거문골	【골짜기】		
			가루고개,밤나무재[栗木峙]	【고개】		
	구절 2리	제 1반	양지마을	【마을】	구절 2리	제 1반
	"	제 2반	양지마을	【마을】	"	제 2반
	"	제 3반	양지마을	【마을】	"	제 3반
	"	제 4반	종량,왕신(往信),절골,		"	제 4반
			사지목이	【마을】		
			종량산,오장산,노추산(魯鄒山)	【산】		
			종량골	【골짜기】		
			병풍바위,안도리지돌이,			
			다래미한숨바우	【바위】		
			오장폭포	【폭포】		
			이성대(二聖臺)	【누각】		
	구절 3리	제 1반	중동,수리내미,소래동,수이동,		구절 3리	제 1반
			세찌모탱이	【마을】		
			사달골,작은벌막골,원골,덕골,			
			작은사달,병풍바우골,내미끝,			
			너래골,이시밭골,물푸레	【골짜기】		
			사달산(四達山),새양봉,			
			새목재[鳥項峙]	【산】		
			넛둔지,말구뎅이,			
			시루방우둔지	【둔지】		
			목넘이재,덕재	【고개】		
			시루방우	【바위】		
	"	제 2반	중동	【마을】	"	제 2반
			고비덕,괴비데기	【둔지】		
			괴비데기골,물안골,			
			고집골	【골짜기】		
			중동샘물	【샘】		
	"	제 3반	쇠꿉나들이	【마을】	구절 3리	제 3반
			송새골	【골짜기】		
			사지목이등판	【산】		
여량면	고 양 리	제 1반	신기동(新基洞),가래실	【마을】	고 양 리	제 1반
			티리,절터골,제당골,절골,			
			큰잣바우골,너래막골	【골짜기】		
			속새등,박달고데이,			
			짤룩목재이	【산】		
			장수바우,용바우	【바위】		
			용소폭포	【폭포】		
	"	제 2반	스무골[二十谷]	【마을】	"	제 2반
			피앗골,살구나무골,제당골,			
			고무실골,물금골,서낭뒷골	【골짜기】		
			남산	【산】		
	"	제 3반	삼거리[三街洞],안터	【마을】	"	제 3반
			솔안	【산】		
			쬐기골,옥단이골,굴물골	【골짜기】		
			굴물등	【동굴】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여량면	고 양 리	제 4반	큰골	【마을】	"	제 4반
			큰재골,성재골,벌그무실골,			
			황기골,가르매골	【골짜기】		
			상정바위	【산】		
	"	제 5반	중복골,벌그무골,돌골	【골짜기】	"	제 5반
			마치(馬峙),큰마치,꼬부랑재,			
			곰목이재	【고개】		
			북방우,고양산(高陽山),괘현산	【산】		
	"	제 6반	고창골(古昌谷)	【마을】	"	제 6반
			아랫골,명지막골,회금골,산지골,			
			음터골,빈지골,벼락골,			
			산막골,쇠막골	【골짜기】		
			반론산	【산】		
			벼락재	【고개】		
	남 곡 리	제 1반	앞실골	【마을】	남 곡 리	제 1반
			두리봉,작은등부리.첫등부리.			
			중간등부리,수패봉,장군바우재,			
			화채봉	【산】		
			샛골,그샛골,등부라골,가달팽이,			
			화채봉골	【골짜기】		
			용바우	【바위】		
	"	제 2반	고사리,웃말,아랫말,말게	【마을】	"	제 2반
			빈터골,살구나무골,서낭골,			
			배나무골,구지내골,풀무간골,			
			새달이골,쇠골	【골짜기】		
			행상목이,터께	【산】		
			고비덕길	【도로】		
			괴비덕말랑			
			큰너그니재,유현(鍮峴),너근령	【고개】		
	"	제 3반	되골,도일동,웃골,아랫골,		"	제 3반
			되어구,굴아우,북바우	【마을】		
			감재등	【둔지】		
			애미골,쇠직이골	【골짜기】		
			굴등지,남곡재,매봉산	【산】		
			터께	【고개】		
			쇠직이골	【골짜기】		
여량면	봉 정 리		내봉정(內鳳亭),옛골,			
			여촌(餘村)	【마을】		
	"	제 1반	웃말	【마을】	봉 정 리	제 1반
			달그메	【산】		
			한고개	【고개】		
			여우새	【도로】		
			한방소	【소】		
			웃말뱃터	【나루】		
			송정거리	【거리】		
	"	제 2반	옥터,옥밭둔지	【둔지】	"	제 2반
			골말,샛말	【마을】		
			작은너서피골,큰너서피골,			
			큰할미골,거문골,달개골,			
			곰바우골,벼락재골,속새골,			
			범바우골	【골짜기】		
			방두둑,고수치	【전답】		
			비룡산	【산】		
	"	제 3반	벌말,관터,날개터	【마을】	"	제 3반
			벌말뱃터	【나루】		
			청룡끝	【산】		
			승지골	【골짜기】		
	"	제 4반	발면(發綿),발면동(發綿洞)	【마을】	"	제 4반
			공수골,매골	【골짜기】		
			작은수리봉,큰수리봉	【산】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여량면	봉 정 리	제 5반	외봉정,새치,근너새치, 새치양지 【마을】 돌티미,청룡이 【산】 짤룩목 【고개】	"	제 5반	
북평면	장열 1리	제 1반	장열(長悅) 【마을】 괄대비리 【바위】 굴등,꽃밭재 【산】 엄용굴 【동굴】 헐음내기 【골짜기】	장열 1리	제 1반	
	"	제 2반	장열(長悅) 【마을】 옹수골,바람부리 【골짜기】 장열나루터 【나루】	"	제 2반	
	"	제 3반	장열(長悅) 【마을】 솔가재,큰질위,뾰족봉 【산】 꽃베루 【고개】 웃배나루터 【나루】 장열소 【소】	"	제 3반	
	"	제 4반	장열(長悅) 【마을】	"	제 4반	
	장열 2리	제 1반	하남골 【마을】 산제골[山祭谷] 【골짜기】 갈번지 【전답】 가평항 【동굴】 이등별 【산】	장열 2리	제 1반	
	"	제 2반	가드루 【마을】 가평나루 【나루】 올창소 【소】 하남웃골 【골짜기】 옥녀봉(玉女峰) 【산】	"	제 2반	
	"	제 3반	범바우 【마을】 덕장골 【골짜기】	"	제 3반	
	북평 1리	제 1반	북평(北坪),하동, 미운니[密雲] 【마을】 거무소,아랫거무소,북평소 【소】 용소강 【하천】	북평 1리	제 1반	
	"	제 2반	하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하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하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하동 【마을】	"	제 5반	
	북평 2리	제 1반	하동 【마을】	북평 2리	제 1반	
	"	제 2반	붉은언덕 【마을】 푸리봉,난향산 【산】 난향로원 【공원】	"	제 2반	
	"	제 3반	상동 【마을】	"	제 3반	
	북평 3리	제 1반	상동 【마을】	북평 3리	제 1반	
	"	제 2반	상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상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상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상동 【마을】	북평 3리	제 5반	
	"	제 6반	상동 【마을】	"	제 6반	
	"	제 7반	상동 【마을】	"	제 7반	
	북평 4리	제 1반	하동 【마을】	북평 4리	제 1반	
	"	제 2반	하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하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하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하동 【마을】	"	제 5반	
	"	제 6반	하동 【마을】	"	제 6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북평면	북평 5리	제 1반	항골[項洞],양지마을 벌대골(潘內谷) 너스메기	【마을】 【골짜기】 【산】	북평 5리	제 1반
	"	제 2반	항골[項洞],석두(石頭) 아차골(我差谷), 도첨지맹거골 석대탑(石垈塔) 두리봉	【마을】 【골짜기】 【탑】 【산】	"	제 2반
	"	제 3반	항골[項洞]	【마을】	"	제 3반
	"	제 4반	항골[項洞] 강선암(降仙唵) 노루모 용소골,차랑골,양푸내기	【마을】 【사찰】 【고개】 【골짜기】	"	제 4반
	북평 6리	제 1반	상동	【마을】	북평 6리	제 1반
	"	제 2반	상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상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상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상동 나전역	【마을】 【역】	"	제 5반
	남평 1리	제 1반	본동,성석(省石),솔돌, 새릿골	【마을】	남평 1리	제 1반
	"	제 2반	본동,고갯마을	【마을】	"	제 2반
	"	제 3반	본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본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옴모테이 오음봉(五音峰) 호보모 북진(北津) 평둔소(坪屯沼) 연골	【마을】 【산】 【고개】 【나루】 【소】 【골짜기】	"	제 5반
	"	제 6반	신촌(新村)	【마을】	"	제 6반
	"	제 7반	장승배기,새마을 남평나루터[南坪津], 소돌배나루 도름소,용소(龍沼) 용바우	【마을】 【나루】 【소】 【바위】	"	제 7반
	남평 2리	제 1반	고갯마을,새릿골어귀	【마을】	남평 2리	제 1반
	"	제 2반	고갯마을	【마을】	"	제 2반
	"	제 3반	다슬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다슬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다슬동	【마을】	"	제 5반
	"	제 6반	봉화치(奉火峙) 거리봉화치,한대골[寒垈谷], 바들아니 북지골	【산】 【마을】 【골짜기】	"	제 6반
	남평3리	제 1반	문화마을	【마을】	남평 3리	제 1반
		제 2반	문화마을	【마을】	"	제 2반
		제 3반	문화마을	【마을】	"	제 3반
		제 4반	농촌휴양단지	【마을】	"	제 4반
	문 곡 리	제 1반	본동,물금 우투메기 복두그니 상정바위 문곡나루	【마을】 【골짜기】 【산】 【바위】 【나루】	문 곡 리	제 1반
	"	제 2반	큰골,작은골 마재[馬峙],잣바우	【마을】 【고개】	"	제 2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북평면	문 곡 리	제 3반	스무골[二十洞],배냇골, 백운동(白雲洞) 푯대봉,시무산 새릿골,뒷골,배나무골 지르메재	【마을】 【산】 【골짜기】 【고개】	"	제 3반
	나전 1리	제 1반	배미,웃배미,아랫배미, 새물출이,음달마을,방두둑 할미골,문바우골,큰골, 밤나무골,승장골,배도골 민둥산,수리봉,딴봉,높은봉 상짐바우 송석역	【마을】 【골짜기】 【산】 【바위】 【역】	나전 1리	제 1반
	나전 1리	제 2반	명주내[明紬川],구단이	【마을】	나전 1리	제 2반
	"	제 3반	명주내[明紬川],어라전, 웃터골,암반대기 명지내산	【마을】 【산】	"	제 3반
	"	제 4반	어도원(於桃源),싸리덕 오두치(烏頭峙) 웃묵골,큰골	【마을】 【고개】 【골짜기】	"	제 4반
	나전 2리	제 1반	진드루,쇠지르기 큰다래골,새미골	【마을】 【골짜기】	나전 2리	제 1반
	"	제 2반	진드루 싸리골,작은다래골	【마을】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졸드루,가느드루 탑상골,제당골,석두골, 신촌배터	【마을】 【골짜기】	"	제 3반
	숙 암 리	제 1반	우면주(牛眠州),낡은터 오대천 성황골,장구목이 오잠(烏岑),가리왕산	【마을】 【하천】 【골짜기】 【산】	숙 암 리	제 1반
	"	제 2반	벗밭,높은터[高基],깊은터 금곡	【마을】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큰터,통진목[通津項], 소나무터 안돌이지돌이다래미한숨바우 갈미봉골,큰쇠골,작은쇠골	【마을】 【산】 【골짜기】	"	제 3반
	"	제 4반	단임(丹林),바깥단임, 안단임,장재터[長財基] 계룡잠(鷄龍岑),우동골	【마을】 【골짜기】	"	제 4반
임계면	가 목 리	제 1반	가목(柯木),부수배[ ] 새덕,버덩들 새목골,명주목골,신흥골,질골, 배나무골,너래골,두래골, 굴아우골,칠만이골 매봉산,갈미봉,달팽이산, 상월산 명주목이,원방재 이기령(耳基領),더바지령 가목천(柯木川)	【마을】 【전답】 【골짜기】 【산】 【고개】 【고개】 【하천】	가 목 리	제 1반
	"	제 2반	군대(軍垈),눈꽃마을 자병산(紫屛山)	【마을】 【산】	"	제 2반
	가 목 리	제 3반	마상골 나발고데이 백복령	【마을】 【산】 【고개】	"	제 3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임계면	도전 1리	제 1반	외도전,밧뙈【마을】 뒷버덩【산】 메니미【골짜기】	도전 1리	제 1반
	"	제 2반	외도전【마을】	"	제 2반
	"	제 3반	뒷골【마을】 사자목이,새목이【고개】 선바위골【골짜기】 새목이【고개】 용소(龍沼)【소】	"	제 3반
	도전 2리	제 1반	점구비,기추목이,지남바우, 간촌,사시내【마을】 점곡들【들판】 아우라지【하천】 풀방아골【골짜기】 선바위산【산】	도전 2리	제 1반
	"	제 2반	내도전(內道田),상두밭, 장아리【마을】 병골,사시래골,매바위골, 버드내골,굽은골,너래골, 부처바우골,곧은골【골짜기】	"	제 2반
임계면	직원 1리	제 1반	밧뙈,외도전【마을】	직원 1리	제 1반
	"	제 2반	밧뙈,영두촌【마을】 방우리버덩【전답】 상장바우골,사리미골【골짜기】	"	제 2반
	직원 2리	제 1반	피원【마을】 큰피원,골말,꼬치골,화절촌【골짜기】 된봉【산】	직원 2리	제 1반
	"	제 2반	큰피원,영마루【마을】 수무골,큰뚝다리골, 비선거리골【골짜기】 형제봉,민둥산【산】 밧당두,당두【전답】 생계령,갈고개【고개】	"	제 2반
	"	제 3반	구룡동,늙은피,노직동(老稷洞), 작은피원【마을】 된병골,큰골,작은골,통로골, 부대지골【골짜기】 국시재【고개】	"	제 3반
임계면	임계 1리	제 1반	귀새,점촌,검무나들이,안검무【마을】 귀삿골【골짜기】 버들앗,안검들【전답】 검무고개【고개】 마산봉,고갯재【산】	임계 1리	제 1반
	"	제 2반	독토고지【마을】	"	제 2반
	"	제 3반	독토고지,가장골,물방아골, 사리미골,한사리골【골짜기】 땔나무골【마을】	"	제 3반
	"	제 4반	장승거리【마을】 거리골,큰골【골짜기】 도름산【산】 도름산밑들【전답】	"	제 4반
	임계 2리	제 1반	태봉【산】 태봉안【마을】	임계 2리	제 1반
	"	제 2반	양짓말,음짓말,골말,관마을, 관두골【마을】 태봉들【전답】	"	제 2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임계면	임계 2리	제 3반	가실피【마을】 범골【골짜기】 가실피재【고개】 삿갓봉【산】	"	제 3반
	임계 3리	제 1반	고내,화성【마을】	임계 3리	제 1반
	"	제 2반	고내【마을】 살피골,월대골,나근터골【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웃고내,금방동,하금방동, 새발목이【마을】 북동골,지르마골【골짜기】 석병산(石屛山)【산】	"	제 3반
	임계 4리	제 1반	갈마동,갈미늪,큰골,큰골종점, 평양말,큰평양,작은평양, 지르마동【마을】 매봉【산】 영뒷골【골짜기】	임계 4리	제 1반
	임계 4리	제 2반	노루마당,바깥노루마당, 운대동,명소동(鳴沼洞),늘목이【마을】 끝밭골,운대장골【골짜기】	임계 4리	제 2반
임계면	송계 1리	제 1반	소래골【마을】 큰너그니재【고개】 보섭령(步攝嶺)【고개】	송계 1리	제 1반
	"	제 2반	송원동(松院洞)【마을】 소란【마을】 양지마을【마을】 쯧골【골짜기】 옻골【골짜기】	"	제 2반
	송계 2리	제 1반	골말,웅기장골【마을】 버들고개【고개】	송계 2리	제 1반
	"	제 2반	골말【마을】	"	제 2반
	송계 3리	제 1반	송계동【마을】	송계 3리	제 1반
	"	제 2반	송계동【마을】	"	제 2반
	"	제 3반	송계동【마을】	"	제 3반
	"	제 4반	송계동【마을】	"	제 4반
	송계 4리	제 1반	뒷말[後洞]【마을】	송계 4리	제 1반
	"	제 2반	뒷말[後洞]【마을】	"	제 2반
	"	제 3반	뒷말[後洞]【마을】	"	제 3반
	"	제 4반	뒷말[後洞]【마을】 고두벌들【밭】	"	제 4반
	"	제 5반	뒷말[後洞]【마을】	"	제 5반
	송계 5리	제 1반	새베리,골말【마을】 절골,집골【골짜기】	송계 5리	제 1반
	"	제 2반	골말어귀【마을】	"	제 2반
	"	제 3반	칠성바위【바위】 등말,등모태이【마을】	"	제 3반
	"	제 4반	검무평(劍舞坪),검무,안검무【마을】 보안산【산】 검무평들【전답】	"	제 4반
	송계 6리	제 1반	송계동【마을】	송계 6리	제 1반
	"	제 2반	장터거리【마을】	"	제 2반
	"	제 3반	장터거리【마을】	"	제 3반
	"	제 4반	뒷마을【마을】	"	제 4반
	송계 7리	제 1반	송계동【마을】	송계 7리	제 1반
	"	제 2반	송계동【마을】	"	제 2반
	"	제 3반	송계동【마을】	"	제 3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임계면	송계 8리	제 1반	골말 버들고개 옹기장골,횟골	【마을】 【고개】 【골짜기】	송계 8리	제 1반
	"	제 2반	골말	【마을】	"	제 2반
	"	제 3반	골말 쇠잡는골,문둥이골	【마을】 【골짜기】	"	제 3반
임계면	봉산 1리	제 1반	송천동	【마을】	봉산 1리	제 1반
	"	제 2반	송천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송천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장찬동 장찬성 우시장터 안산,마산봉	【마을】 【산성】 【장터】 【산】	"	제 4반
	"	제 5반	동산아파트	【마을】	"	제 5반
	"	제 6반	동산아파트	【마을】	"	제 6반
	봉산 2리	제 1반	봉산 봉산들	【마을】 【전답】	봉산 2리	제 1반
	"	제 2반	봉산 두리봉	【마을】 【산】	"	제 2반
	"	제 3반	바우안 안산	【마을】 【산】	"	제 3반
	봉산 3리	제 1반	등봉동,둔벙골,안터,회목이 몰아우골 황장산,두리봉	【마을】 【골짜기】 【산】	봉산 3리	제 1반
	"	제 2반	구미동,가랭이 구미정(九美亭)	【마을】 【정자】	"	제 2반
	"	제 3반	말루,메두	【마을】	"	제 3반
임계면	낙천 1리	제 1반	역드루	【마을】	낙천 1리	제 1반
	"	제 2반	태골	【마을】	"	제 2반
	"	제 3반	태골 광산골,이십맥이,우무골, 매골,설미재골,갈거리골	【마을】 【골짜기】	"	제 3반
	낙천 2리	제 1반	버덩마을 소틀골 용소,용상계 용마굴 독지매기	【마을】 【골짜기】 【소】 【동굴】 【산】	낙천 2리	제 1반
	"	제 2반	미락동,중마을 분태골,소특재골 미락숲 소특재	【마을】 【골짜기】 【숲】 【산】	"	제 2반
	"	제 3반	골말 지름골	【마을】 【골짜기】	"	제 3반
	"	제 4반	사을기,절터굼 산성골 노인봉	【마을】 【골짜기】 【산】	"	제 4반
	낙천 3리	제 1반	오누골,조개골,가래포기골 무릎재비	【골짜기】 【마을】	낙천 3리	제 1반
	"	제 2반	설내,혈천 목이너미,숯고개,당고개 설내들	【마을】 【고개】 【전답】	"	제 2반
	"	제 3반	설내	【마을】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임계면	용산 1리	제 1반	달탄,골안골,월탄	【마을】	용산 1리	제 1반
	"	제 2반	달탄 월탄들	【마을】 【전답】	"	제 2반
	"	제 3반	달탄 싸근다리,햇골	【마을】 【골짜기】	"	제 3반
	용산 2리	제 1반	돈들,건네들,돈들양지마을 바리골 위령산(威靈山)	【마을】 【골짜기】 【산】	용산 2리	제 1반
	"	제 2반	용골,구역말,용골들 중구평(中邱坪) 자후재	【마을】 【전답】 【고개】	"	제 2반
	"	제 3반	용골	【마을】	"	제 3반
	문래 1리	제 1반	양지마을	【마을】	문래 1리	제 1반
	"	제 2반	양지마을 문래산	【마을】 【산】	"	제 2반
	"	제 3반	마태골	【골짜기】	"	제 3반
	문래 2리	제 1반	하동,골모탱이 가는골	【마을】 【골짜기】	문래 2리	제 1반
	"	제 2반	새냇가 독장골 새목이 봉고등 갈버등,버덩	【마을】 【골짜기】 【고개】 【산】 【전답】	"	제 2반
	문래 3리	제 1반	새루 새루골 박달고딩이 골지천(骨只川)	【마을】 【골짜기】 【산】 【하천】	문래 3리	제 1반
	"	제 2반	석둔 작은골 은고개 장터거리	【마을】 【골짜기】 【고개】 【장터】	"	제 2반
	"	제 3반	음달마을,골거리,말미,병두 소래길	【마을】 【골짜기】	"	제 3반
	덕 암 리	제 1반	소래골,큰소래,작은소래 소래재	【마을】 【고개】	덕 암 리	제 1반
	"	제 2반	소래어구,삼거리,탑거리 큰가산 복상재	【마을】 【산】 【고개】	"	제 2반
	"	제 3반	구룡동 뱃둔골	【마을】 【골짜기】	"	제 3반
	"	제 4반	무낼골	【마을】	"	제 4반
	"	제 5반	동무지 샘베리골 북동재	【마을】 【골짜기】 【고개】	"	제 5반
	"	제 6반	장강촌,버실이,우밀,공전	【마을】	"	제 6반
	고 양 리	제 1반	수터,손오거리 안골	【마을】 【골짜기】	고 양 리	제 1반
	"	제 2반	하승두(下升斗) 고무덕골,무릎재비골 무릎재비재	【마을】 【골짜기】 【산】	"	제 2반
	"	제 3반	하일(下日),고수마리골 여내골	【마을】 【골짜기】	"	제 3반
	"	제 4반	상승두 다래재 덕질골,재미골	【마을】 【고개】 【골짜기】	"	제 4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임계면	고 양 리	제 5반	노나무,적목동(赤木洞), 덕질[德峙],샛말,웃말 【마을】 고양산(高陽山),괘현산 【산】	"	제 5반
	반천 1리	제 1반	웃재론,새이말 【마을】 새말들 【전답】 절골,말미골 【골짜기】 돌고지재 【고개】	반천 1리	제 1반
	"	제 2반	재론,아랫재론,양지말,음지말 【마을】	"	제 2반
	"	제 3반	노일(魯日),여우실 【마을】 여우새,한고개 【고개】	"	제 3반
	"	제 4반	도장골 【마을】 월루골 【골짜기】	"	제 4반
	반천 2리	제 1반	둔봉골,건네사을기 【마을】	반천 2리	제 1반
	"	제 2반	느랏,어전동(於田洞), 버덩마을,큰마을,산성(山城) 【마을】 안께산 【산】	"	제 2반
	"	제 3반	월루 【마을】 북바우재 【산】	"	제 3반
	"	제 4반	월루 【마을】 도둑골 【골짜기】 월루재 【산】	"	제 4반

□ 제안이유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반 조정을 통해 주민 편의 및 행정능률 극대화를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반 조정(별표)

나. 조정내역

1) 애산2리 12반 → 애산6리 2반(신설)

2) 애산2리 13 ~ 14반 → 애산6리 3반(신설)

3) 애산6리 1 ~ 6반 신설

4) 봉양3리 6 ~ 7반 → 6반(통합)

5) 봉양3리 9반, 11반 → 9반(통합), 11반(폐지)

6) 봉양3리 12반 → 7반(이동)